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2허5904 등록무효(특)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지담

담당변리사 정동균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진형

변 론 종 결 2023. 6. 8.

판 결 선 고 2023. 7. 20.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2. 9. 29. 2022당174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하다)을 취소하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 1) 발명의 명칭: 여성용 심리스 보정 속옷
-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5. 1. 5./ 2014. 8. 12./ 2016. 5. 25./ 제10-1626246호
 - 3) 특허권자: 피고
 - 4) 청구범위

【청구항 1】 신축성이 있는 원단을 무봉제 방식으로 상부 압박부(500)와 하부 압박부(600) 사이에 형성하되(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신체 앞쪽을 지지하여 압박하기 위한 앞면(100); 신체 뒤쪽을 지지하여 압박하기 위해 상하 두 개로 나뉜 뒷면(200); 상하 두 개로 나뉘어서 앞면(100)과 뒷면(200) 사이를 연결하는 한 쌍의 측면(30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및 상기 뒷면(200)과 측면(300) 사이에 일체로 이루어지게 형성하고, 양단이 각각 앞면(100)의 양측에 일체로 형성하여 허리를 압박하는 압박 띠(400);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신체를 압박하는 힘은 앞면(100) < 측면(300)< 압박 띠(400) 순으로 강하게 형성한 것(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여성용 심리스 보정 속옷(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앞면(100)은, 압박 띠(400)의 양단이 연결되는 양측 테두리 부분이 오목하게 안으로 들어가도록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여성용 심리스 보정 속옷(이하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뒷면(200)은, 두 개의 사다리꼴 모양으로 형성하여 각 사다리꼴 모양의 윗변이 각각 압박 띠(400)와 일체로 형성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여성용 심리스 보정 속옷(이하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이라 한다).

5) 발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개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여성용 심리스 보정 속옷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압박력이 가장 강한 압박 띠를 앞면의 양쪽 테두리에 일체로 형성하여 이 앞면을 좌우 옆구리 쪽으로 당겨 가슴과 배 그리고 복부를 전체적으로 압박하여 보정 효과를 높이면서도 허리 라인이 더욱 두드러져 보이게 구성함으로써, 봉제선이 없어 착용감이 우수할 뿐만 아니마 보정효과를 한층더 높일 수 있게 한 것이다.

대 배경기술

[0006] 하지만, 기존의 보정 속옷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0007] (1) 체형 교정을 하기 위한 코르셋의 경우, 신축성이 없고 딱딱한 원단으로 복부를 강제로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종류의 보정 속옷은 착용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축성이 없어 단순 복부 압박으로 보정 효과가 떨어진다.

[0008] (2) 또한, 복부 등의 강제 압박으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거나 착용감이 좋지 않아 오랫동안 착용할 경우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0009] (3) 보정하고자 하는 신체 부위의 형상에 알맞게 재단하여 봉제 방식으로 보정 속옷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강제로 압박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 봉제선이 없는 무봉제(심리스) 제품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다.

[0010] (4) 특히, 봉제 방식으로 제작한 보정 속옷은 보정 속옷에 대한 착용감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름철과 같이 얇은 옷을 입을 때에는 착용 여부를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 착용자가 불쾌감을 느낄 우려가 있다.

[0011] (5) 이러한 불쾌감은 코르셋과 같이 두꺼운 원단으로 제작한 보정 속옷일수록 더 심하다.

[0012] (6) 보정 속옷의 테두리 부분이 신축성이 좋지 않아 보정 속옷의 끝단 부분이 말리는 경우가 있다.

[0013] (7) 종래의 보정 속옷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압박하므로 그 특정 부위에 군살이 많이 있으면 압박하는 부분 주변으로 군살이 도드라지게 돌출하여 몸매를 망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대 해결하려는 과제

[0015] 본 발명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발명한 것으로, 무봉제 방식으로 신체의 앞을 가리는 앞면을 허리를 감싸는 압박 띠를 이용하여 양쪽 옆구리 쪽으로 잡아당겨서 몸매 전체에 대하여 강하게 압박하여 보정할 수 있게 구성함으로써, 앞면이 가슴과 배 그리고 복부전체를 압박하여 군살을 없애 전체적으로 몸매를 보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한 여성용심리스 보정 속옷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0016] 특히, 본 발명은 앞면과 측면보다 압박 띠가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게 구성함으로써, 앞면을 양쪽 옆구리 쪽으로 강하게 당겨 이러한 몸매 보정 효과를 높이면서도 허리선이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게 한 여성용 심리스 보정 속옷을 제공하는 데 다른 목적이 있다.

[0017] 또한, 본 발명은 압박 띠의 양단과 일체로 형성하는 앞면의 양쪽 테두리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게 형성함으로써, 이 압박 띠가 더욱 강하게 앞면을 옆구리 쪽으로 당길 수 있게 하여 이러한 몸매 전체에 대한 보정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한 여성용 심리스보정 속옷을 제공하는 데 또 다른 목적이 있다.

래 과제의 해결 수단

[0018] 본 발명에 따른 여성용 심리스 보정 속옷은, 신축성이 있는 원단을 무봉제 방식으로 상부 압박부(500)와 하부 압박부(600) 사이에 형성하되, 신체 앞쪽을 지지하여 압박하기 위한 앞면(100); 신체 뒤쪽을 지지하여 압박하기 위해 상하 두 개로 나뉜 뒷면(200); 상하 두 개로 나뉘어서 앞면(100)과 뒷면(200) 사이를 연결하는 한 쌍의 측면(300); 및 상기 뒷면(200)과 측면(300) 사이에 일체로 이루어지게 형성하고, 양단이 각각 앞면(100)의 양측에 일체로 형성하여 허리를 압박하는 압박 띠(400);를 포함하고, 신체를 압박하는 힘은 앞면(100)<측면(300)<압박띠(400) 순으로 강하게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매 발명의 효과

[0021] 본 발명에 따른 여성용 심리스 보정 속옷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0022] (1) 앞면의 양쪽을 압박 띠가 잡아서 양쪽 옆구리 쪽으로 당겨주므로 가슴과 배 그리고 복부 전체에 대하여 양쪽 옆구리 쪽으로 당겨지면서 몸매 전체에 대하여 보정 효과 를 얻을 수 있어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0023] (2) 특히, 띠 형상의 압박 띠의 양단을 일체로 형성하는 앞면의 양쪽 테두리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게, 예를 들어서 모래시계와 같은 형상으로 형성함으로써, 압박 띠가 더욱 강하게 앞면을 양쪽 옆구리 쪽으로 당길 수 있게 하여 이러한 몸매 보정 효과를 더욱높일 수 있다.

[0024] (3) 또한, 압박 띠가 허리 부분을 감싸면서 앞면보다 강한 압박력으로 앞면을 양쪽 옆구리 쪽으로 당기면서 허리를 압박하므로 이처럼 몸체 보정 효과와 더불어 허리선을 살릴 수 있어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0025] (4) 양쪽 옆구리에 앞면보다 강한 압박력을 가진 측면을 두 개로 나눠서 구성하고, 두 개의 측면이 압박 띠와 형성함으로써, 군살이 많은 옆구리 부분에 대한 보정 효과를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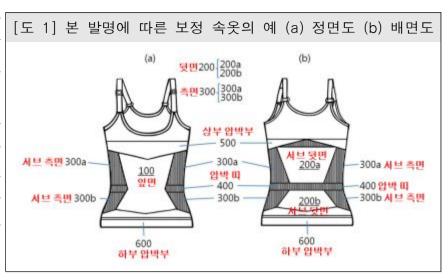
배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29] (구성)

[0030] 본 발명에 따른 여성용 심리스 보정 속옷은, 신체의 앞쪽과 뒤쪽을 각각 지지하는 앞면(100)과 뒷면(200), 이들 사이를 옆구리와 골반 부분에서 지지하기 위한 측면(300), 그리고 허리를 감싸면서 양쪽 끝이 앞면(100) 양쪽을 잡아 양쪽 옆구리 쪽으로 당겨주는 압박 띠(400)를 포함한다.

[0031] 특히, 본 발명은 이 압박 띠(400)가 가장 센 압박력으로 앞면(100)을 옆구리 쪽으로 당기게 하여 앞면(100)이 가슴과 배 그리고 복부 전체에 걸쳐 압박하게 하여 신체 전반에 걸쳐 압박 효과를 통해 몸매를 보정하는 효과를 얻고, 또한 이 앞면(100)보다 강한 세기로 옆구리와 그 아래를 압박할 수 있게 측면(300)을 제작하여 옆구리 군살에 대한 보정효과를 높이며, 가장 강하게 압박하는 압박 띠(400)를 통해 허리선이 더욱 돋보이도록 보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0032] 여기서, 본 발명에 따른 보정 속옷은 무봉제(심리스) 방식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구성요소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각 구성요소는 실제 하나로서 일체형으로 제작한다. [0034] 앞면(100)은, 도 1과 같이, 신체 앞쪽을 전체적으로 지지할 수 있 게 구성한다. 이러한 앞면 (100)은 가슴과 배 그리고 복부를 한 번에 지지할 수 있게 구성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뱃살과 같이 군 살이 많이 생기는 배와 복 부 부분을 지지할 수 있게 구성할 수도 있다.



[0035]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앞면(100)은, 후술할 압박 띠(400)를 통해 양쪽 옆구리로 당겨지게 구성하는 데, 이때 양쪽으로 잘 당겨지도록 이 압박 띠(400)의 압박하는 힘보다 약하게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이 압박 띠(400)가 강한 힘으로 앞면(100)을 양쪽에서 잡아서 양쪽 옆구리 쪽으로 당겨지게 하여 앞면(100)이 가슴과 배그리고 복부 전체에 걸쳐 골고루 보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0037] 뒷면(200)은, 도 1과 같이, 신체 뒤쪽을 지지하기 위한 구성요소로서, 두 개로나눠서 구성한다. 이는 바람직하게는 뒷면(200)이 앞면(100)과 마찬가지로 하나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상술한 바와 같이, 압박 띠(400)가 하나의 띠 형태로서 그 양쪽 끝이 앞면(100) 양쪽을 잡아 옆구리 쪽으로 당겨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기 위함이다.

[0039] 측면(300)은, 도 1과 같이, 앞면(100)과 뒷면(200)의 양쪽을 연결하여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쌍을 구성한다. 이때, 각 측면(300)은 옆구리 부분과 골반 부분을 각각 지지할 수 있도록 상하 두 개의 서브 측면(300a, 300b)으로 나눠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40]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서브 측면(300a, 300b)은 압박 띠(400)와 한쪽 면이 일체로 맞닿게 형성하고, 특히 옆구리와 골반 부분을 압박하는 힘은 앞면(100)보다 강하고 압박 띠(400)보다 약하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통상적으로 군살이 옆구리와 그 아래쪽에 많이 붙고 앞면(100) 때문에 옆구리 쪽으로 몰리는 군살에 대하여 조금 강하게 압박할 수 있게 하여 군살을 보정할 수 있게 하여 몸매 보정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0041] 압박 띠(400)는, 도 1과 같이, 미리 정한 폭을 가진 띠 형상으로 이루어지며, 허리 부분을 감싸면서 상술한 뒷면(200)과 측면(300) 사이에서 일체로 이루어지게 형성한다.

[0042]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압박 띠(400)는 양쪽을 각각, 상술한 바와 같이, 앞면(100)의 양쪽 테두리에 각각 일체로 형성함으로써, 이 압박 띠(400)가 앞면 (100)을 옆구리 쪽으로 당겨 몸매 전체에 대한 보정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한다.

[0043] 특히,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압박 띠(400)는 앞면(100)과 측면 (300)보다 가장 강하게 압박할 수 있게 구성함으로써, 앞면(100)을 강하게 옆구리 쪽으로 당겨 몸매 전체에 대한 보정 효과와 더불어 이 압박 띠(400)가 허리선을 따라 압박하여 허리선이 더욱 돋보이도록 보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44] 도면에서, 미설명 부호 "500"과 "600"은 각각 보정 속옷의 양쪽 테두리를 구성하는 상부 압박부와 하부 압박부를 각각 나타내며, 본 발명에 따른 구성은 이들 상부 압박부(500)와 하부 압박부(600) 사이에 구성한다.

[0045] 이처럼 이루어진 본 발명에 따른 심리스 보정 속옷은 다음과 같은 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0046] (1) 압박 띠는 가장 강한 세기로 압박하므로 허리선이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여 허리선을 살려준다.

[0047] (2) 앞면은 그 양쪽을 압박 띠가 양쪽 옆구리 쪽에서 잡아당겨 주므로 이 앞면이 가슴과 배 그리고 복부 전체에 대하여 압박하여 뱃살과 군살을 양쪽 옆구리 쪽으로 양분시켜 주므로 자연스럽게 몸매 전체에 대하여 보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보정 효과는 앞면보다 압박 띠의 압박력이 더 세므로 몸매를 보정하는 효과를 더 높일수 있다.

[0048] (3) 측면이 앞면보다 강한 힘으로 옆구리와 골반 부분을 압박하므로, 옆구리 군살이나 앞면 때문에 양쪽으로 밀린 군살 등을 앞면보다 강하게 측면에서 압박하므로 이러한 군살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여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보정할 수 있다.

나. 선행발명들1)

1) 선행발명 1(갑 제5호증)

¹⁾ 원고는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선행발명 3에서 11을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제출하였다. 선행발명 1은 디자인, 선행발명 3, 6은 실용신안에 해당하나 편의상 모두 '특허'로 표기한다.

2007. 3. 20.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디자인공보 제30-0443965호에 게재된 '캐미솔'이라는 명칭의 디자인으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1]과 같다.

2) 선행발명 2(갑 제6호증)

1999. 4. 15.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0-1999-0028784호에 게재된 '체형보정기능을 가지는 피복'이라는 명칭의 발명으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3) 선행발명 3(갑 제7호증)

2011. 2. 9. 공고된 중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1733861호에 게재된 '한방 건강 코르셋'이라는 명칭의 발명으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3]과 같다.

4) 선행발명 4(갑 제8호증)

2006. 6. 22.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6-161202호에 게재된 '보디 슈트'라는 명칭의 발명으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4]와 같다.

5) 선행발명 5(갑 제9호증)

2010. 3. 25.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10-65371호에 게재된 '보정 속옷 및 그 제조 방법'이라는 명칭의 발명으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5]와 같다.

6) 선행발명 6(갑 제10호증)

2002. 2. 28. 공고된 일본 등록실용신안공보 제3084017호에 게재된 '파운데이션 속옷'이라는 명칭의 발명으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6]과 같다.

7) 선행발명 7(갑 제11호증)

1997. 11. 18.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9-296305호에 게재된 '보정 속 옷'이라는 명칭의 발명으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7]과 같다.

8) 선행발명 8(갑 제12호증)

2013. 9. 19.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13-185268호에 게재된 '골반 둘레 지지 띠천을 구비한 쇼츠'라는 명칭의 발명으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8]과 같다.

9) 선행발명 9(갑 제13호증)

2014. 8. 4.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1425597호에 게재된 '체형 보 정 기능을 가지는 의류'라는 명칭의 발명으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9]와 같다.

10) 선행발명 10(갑 제14호증)

2014. 6. 14.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여름보정속옷]D 바스트업 바디쉐이퍼로 뱃살커버~(상체보정/복부보정)'이라는 제목의 게시물(https://E), 2014. 6. 18.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보정속옷] D 바스트업 바디쉐이퍼!'라는 제목의 게시물(https://F), 2014. 6. 19.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뱃살보정속옷 바스트업 바디쉐이퍼 GOOD'이라는 제목의 게시물(https://G), 2014. 6. 20.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여름보정속옷-D 바스트업 바디쉐이퍼 (흰티안에도 부담없이!)'라는 제목의 게시물(https://H), 2014. 6. 20.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보정속옷추천: 바스트업 바디쉐이퍼, 여름 착용 가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https://I)에 게시된 'D 바스트업 바디쉐이퍼'라는 물품에 관한 발명으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10]과 같다.

11) 선행발명 11(갑 제15호증)

2012. 1. 8.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D 보정속옷'이라는 제목의 게시물(https://J 8), 2014. 5. 14.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여성용 보정속옷 D 포스춰업 탑(M)'라는 제목의 게시물(https://K), 2014. 5. 16.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보정속옷 D 포스춰업 탑

후기예요:)'라는 제목의 게시물(https://L), 2014. 5. 19.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M닷컴 -D 포스취 탑 체험리뷰'라는 제목의 게시물(https://N), 2014. 5. 19.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몸매보정속옷 D 포스취업 탑 베이지 라인이 살다!'라는 제목의 게시물(https://O), 2014. 5. 21.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보정속옷 추천] D 포스취 업 탑 BS-9921 착용 후기'라는 제목의 게시물(https://P)에 게시된 'D 포스취업탑'이라는 물품에 관한 발명으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11]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원고는 2022. 6. 21.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2당1741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4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2) 특허심판원은 2022. 9. 29.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4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 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 5에서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혀 있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를 위

²⁾ 비교대상발명 1은 선행발명 1과 같고, 비교대상발명 4는 선행발명 2와 같다.

반하였다.

2) 이 사건 제1, 2, 3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서 11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혀 있다.
- 2) 이 사건 제1, 2, 3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에서 11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명세서 기재불비가 있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는 신체를 압박하는 힘을 앞면(100) <측면(300)<압박 띠(400) 순으로 강하게 형성하는 방법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혀 있지 않다.

2) 구체적 판단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물건의 발명'의 경우 발명의 '실시'란 물건을 생산,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물건의 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

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물건 자체를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실험 등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효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0024] (3) 또한, 압박 띠가 허리 부분을 감싸면서 앞면보다 강한 압박력으로 앞면을 양쪽 옆구리 쪽으로 당기면서 허리를 압박하므로 이처럼 몸체 보정 효과와 더불어 허리선을 살릴 수 있어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0025] (4) 양쪽 옆구리에 앞면보다 강한 압박력을 가진 측면을 두 개로 나눠서 구성하고, 두 개의 측면이 압박 띠와 형성함으로써, 군살이 많은 옆구리 부분에 대한 보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0031] 특히, 본 발명은 이 압박 띠(400)가 가장 센 압박력으로 앞면(100)을 옆구리 쪽으로 당기게 하여 앞면(100)이 가슴과 배 그리고 복부 전체에 걸쳐 압박하게 하여 신체 전반에 걸쳐 압박 효과를 통해 몸매를 보정하는 효과를 얻고, 또한 이 앞면(100)보다 강한 세기로 옆구리와 그 아래를 압박할 수 있게 측면(300)을 제작하여 옆구리 군살에 대한 보정효과를 높이며, 가장 강하게 압박하는 압박 띠(400)를 통해 허리선이 더욱 돋보이도록 보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0035]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앞면(100)은, 후술할 압박 띠(400)를 통해 양쪽 옆구리로 당겨지게 구성하는 데, 이때 양쪽으로 잘 당겨지도록 이 압박 띠(400)의 압박하는 힘보다 약하게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이 압박 띠(400)가 강한 힘으로 앞면(100)을 양쪽에서 잡아서 양쪽 옆구리 쪽으로 당겨지게 하여 앞면(100)이 가슴과 배그리고 복부 전체에 걸쳐 골고루 보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0040]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서브 측면(300a, 300b)은 압박 띠(400)와 한쪽 면이 일체로 맞닿게 형성하고, 특히 옆구리와 골반 부분을 압박하는 힘은 앞면(100)보다 강하고 압박 띠(400)보다 약하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통상적으로 군살이 옆

구리와 그 아래쪽에 많이 붙고 앞면(100) 때문에 옆구리 쪽으로 몰리는 군살에 대하여 조금 강하게 압박할 수 있게 하여 군살을 보정할 수 있게 하여 몸매 보정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0043] 특히,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압박 띠(400)는 앞면(100)과 측면 (300)보다 가장 강하게 압박할 수 있게 구성함으로써, 앞면(100)을 강하게 옆구리 쪽으로 당겨 몸매 전체에 대한 보정 효과와 더불어 이 압박 띠(400)가 허리선을 따라 압박하여 허리선이 더욱 돋보이도록 보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아래와 같이 2005년 공개된 '인체의 3차원 형태와 의복의 변형을 고려한 의복압 예측'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2호증)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보정 속옷에 있어서, 원단의 소재, 제조 방법, 물성, 사이즈 등에 따라 의복압이 달라진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는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과하지 않고서도 앞서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신체를 압박하는 힘을 앞면<측면<압박 띠 순으로 강하게 형성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실시할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체의 3차원 형태와 의복의 변형을 고려한 의복압 예측]

[12면] 의복압(clothing pressure)은 설계된 의복의 활동성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의복 쾌적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Dongsheng & Qing, 2003; Watkins, 1995). 적절한 의복압은 인체를 보호하고, 운동 효율성을 높이며, 심미성을 향상시키는데 유리한 역할을 한다(中嬌美智子, 吉田 敬一, 1997).

[15~16면] 정명선과 류덕환(2002)은 화운데이션 소재의 역학적 특성이 의복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5종의 다른 소재로 제작한 올인원(all-in-one)을 20대 성인 여성에게 착용시키고 3 가지 자세에서 의복압을 측정하였다. 의복 소재의 종류에 따라 의복압은 차이가 있었고, 소재의 역학적 특성 중에서는 탄성회복률과 레질리언스(resilience)가 의복압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중략) 김효은과 함옥상(1994)은 사이즈별, 부위별 의복

압과 구속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3가지 바디 슈트(body suit)를 3 단계 사이즈로 조합하여 실험하였다. 9 종류의 실험 의복으로 18 부위에서 측정한 결과 의복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의복압이 커졌다.

[17면] 심부자와 최선희(1993)는 시판되고 있는 화운데이션류 중에서 3 종(거들, 웨이스트 니퍼, 바디 슈트)을 선정하여 허리선의 앞면, 옆면, 뒷면에서 의복압을 측정하고 피험자가 느끼는 구속감을 알아보았다.

[18면] 최근에 들어서 공기주입식 의복압 센서가 소개되어 약한 압력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들이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으나(김명수 외, 2002; 남윤자, 이준옥, 2002; 이희란 외, 2002), 고가의 독점적 장비인 관계로 여러 기관에서 충분히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면] 의복압은 크게 압력센서를 이용하여 실측하는 방법과 직물의 변형량에 의해 추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센서를 이용하여 의복압을 측정하려는 시도는 1960 년대 후반부터 있어 왔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의복압 센서를 개발하여 거들, 브래지어 등의 압력을평가 하였다(Mitsuno et al., 1991; Shimizu et al., 1988; Shimizu et al., 1990).

한편 원고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소재의 종류, 소재의 특성, 소재의 배치, 제조 순서 및 방법, 소재 이외의 다른 특징으로 압박하는 힘을 형성하는 것인지 등을 포함한 어떠한 사항을 이용하여 압박하는 힘을 다르게 형성하는지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단의 소재, 특성, 배치, 제조 순서 등을 모두 고려하여 앞면, 측면, 압박 띠의 신체 압박력을 조절하고자 하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명세서에 원단의 소재, 특성, 배치, 제조 순서 등을 통한 앞면, 측면, 압박 띠의신체 압박력 제어 방법까지 전부 기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제어하려고 의도하지 않는 원단의 소재, 특성, 배치, 제조 순서 등에 관하여 명세서에서 한정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Q 시크릿 캐미솔 NUDE(S)'라는 제품명의 피고 제품에 대한 의복압 시

험성적서(갑 제17호증)를 제출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제품이 이사건 특허발명의 신체를 압박하는 힘의 순서를 만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의 설명의 기재만으로는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과 실제 제품에 신체를 압박하는 힘의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기재불비 사유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검토 결과 정리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재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1) 관련 법리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 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발명의 율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후2620 판결 등 참조).

- 2)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 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 대비
-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각 구성요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구성요소 |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 | 선행발명 1 |
|------|--------------------------|-----------------------|
| 1 | 신축성이 있는 원단을 무봉제 방식으로 | ○ 체형 보정용으로 착용하는 것임(디 |
| | 상부 압박부(500)와 하부 압박부(600) | 자인의 설명). |
| | 사이에 형성하되, | ○ 가슴 아래를 두르는 엠보싱 조직과 |
| | | 세로 줄무늬 조직은 2중 편직되어 가슴 |
| | | 을 받쳐주고 올려주는 효과가 뛰어남 |
| | | (디자인의 설명). |

| | | ○ 참고도 1의 A부분은 (중략) 신축성 |
|----|----------------------------|-------------------------|
| | | 소재간의 잡아당김을 완충하는 역할을 |
| | | 함(디자인의 설명). |
| | | ○ 신체형상에 따라 입체적으로 편직되 |
| | | 어 착용감이 좋으며, 가슴을 올려주고 |
| | | 허리와 배를 눌러주는 효과가 뛰어남 |
| | | (디자인의 설명). |
| 2 | 신체 앞쪽을 지지하여 압박하기 위한 | ○ 앞면, 뒷면, 측면을 포함(정면도, 배 |
| | 앞면(100); 신체 뒤쪽을 지지하여 압박 | 면도) |
| | 하기 위해 상하 두 개로 나뉜 뒷면 | |
| | (200); 상하 두 개로 나뉘어서 앞면 | |
| | (100)과 뒷면(200) 사이를 연결하는 한 | |
| | 쌍의 측면(300); 및 | |
| 3 | 상기 뒷면(200)과 측면(300) 사이에 일 | 대응하는 구성요소 없음 |
| | 체로 이루어지게 형성하고, 양단이 각 | |
| | 각 앞면(100)의 양측에 일체로 형성하 | |
| | 여 허리를 압박하는 압박 띠(400);를 포 | |
| | 함하고, | |
| 4 | 신체를 압박하는 힘은 앞면(100)<즉면 | ○ 체형 보정용으로 착용하는 것임(디 |
| | (300)<압박 띠(400) 순으로 강하게 형성 | 자인의 설명). |
| |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여성용 심리스 | ○ 신체형상에 따라 입체적으로 편직되 |
| | 보정 속옷. | 어 착용감이 좋으며, 가슴을 올려주고 |
| | | 허리와 배를 눌러주는 효과가 뛰어남 |
| | | (디자인의 설명). |
| 도면 | [도 1] | [정면도] [배면도] |
| 또는 | | |
| 사진 | | |



나)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1) 기술분야 및 구성요소 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여성용 심리스 보정 속옷'에 관한 것이고, 선행발명 1은 '체형 보정용으로 착용하는 캐미솔'에 관한 것이므로, 양 발명은 체형 보정속옷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과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 요소는 상부 압박부(500)(가슴아래부)³⁾와 하부 압박부(600)(하부) 사이에 형성한 신축 성이 있는 원단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선행발명 1에는 참고도 1의 A부분 및 대칭되는 등부분은 신축성 소재간의 잡아당김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고 허리와 배를 눌러주는 효 과가 뛰어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선행발명 1의 캐미솔에서 A부분과 연결되는 가슴 아래부, 앞면, 뒷면의 원단은 신축성이 있는 소재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구성요소 1은 원단을 무봉제 방식으로 형성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이에 대응하는 구성을 명시적으 로 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2) 구성요소 2

³⁾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를 괄호 안에 기재하였고, 이하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와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 요소는 신체 앞쪽을 지지하여 압박하기 위한 앞면(100)(앞면), 신체 뒤쪽을 지지하여 압박하기 위한 뒷면(200)(뒷면), 앞면(100)과 뒷면(200) 사이를 연결하는 한 쌍의 측면 (300)(측면)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구성요소 2의 뒷면(200) 및 측면(300) 은 상하 두 개로 나뉜 반면, 선행발명 1의 뒷면, 측면은 상하 연결된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3) 구성요소 3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은 '뒷면(200)과 측면(300) 사이에 일체로 이루어지게 형성하고, 양단이 각각 앞면(100)의 양측에 일체로 형성하여 허리를 압박하는 압박 띠(400)'인데, 선행발명 1은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3'이라 한다).

(4) 구성요소 4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4는 '신체를 압박하는 힘은 앞면(100) 〈측면(300)〈압박 띠(400) 순으로 강하게 형성한 것'인데, 선행발명 1은 체형 보정용으로 착용하는 것으로 허리와 배를 눌러주는 효과가 뛰어나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부위별 신체를 압박하는 힘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4'라 한다).

다) 차이점에 대한 검토

(1) 차이젂 1

선행발명 1에는 원단을 무봉제 방식으로 형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개시하고 있지 않으나, 선행발명 1의 도면 대용 사진들로부터 가슴아래부, 앞면,

뒷면, 측면이 별도의 봉제선 없이 연결되어 무봉제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당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무봉제 방식으로 보정 속옷 등의 의복을 제조하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상부 압박부, 하부 압박부, 앞면, 뒷면, 측면을 무봉제 방식으로 연결하는 데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공지된 기술을 참작하여 차이점 1을 극복하고 원단을 무봉제 방식으로 형성하는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

(2) 차이점 2, 3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띠 형상의 압박 띠(400)를 앞면(100)의 양쪽 테두리에 일체로 형성하면서 뒷면(200)과 측면(300) 사이에 일체로 이루어지게 형성하여 허리 부분을 감싸도록 구성함으로써 앞면(100)을 옆구리 쪽으로 당겨 몸매 전체에 대한 보정 효과를 얻고자 하는 발명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0041] <u>압박 띠(400)는</u>, 도 1과 같이, 미리 정한 폭을 가진 <u>띠 형상으로 이루어지며, 허</u>리 부분을 감싸면서 상술한 뒷면(200)과 측면(300) 사이에서 일체로 이루어지게 형성한다.

[0042]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u>압박 띠(400)는</u> 양쪽을 각각, 상술한 바와 같이, <u>앞면(100)의 양쪽 테두리에 각각 일체로 형성함으로써, 이 압박 띠(400)가 앞면</u> (100)을 옆구리 쪽으로 당겨 몸매 전체에 대한 보정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한다.

[0043] 특히,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압박 띠(400)는 앞면(100)과 측면 (300)보다 가장 강하게 압박할 수 있게 구성함으로써, 앞면(100)을 강하게 옆구리 쪽으로 당겨 몸매 전체에 대한 보정 효과와 더불어 이 압박 띠(400)가 허리선을 따라 압박하여 허리선이 더욱 돋보이도록 보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아래와 같은 선행발명 2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2의 체형 보정기능을 가지는 피복은 복부를 커버하는 복부천의 웨이스트 위치보다 조금 하방의 대략 복부 중앙 근방 겨드랑이에서 출발하여 피복본체의 겨드랑이 근방을 통과하여 다 시 후중심의 웨이스트 위치에 이르는 제1 스트레치성 띠상체를 구비하는데, 이러한 제 1 스트레치성 띠상체는 복부천을 양측에서 당김으로써 복부에 압력을 가하고 옆구리 군살의 처짐을 억제하여 몸매를 보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선행발명 2의 명세서]

[0010] (1) 본 발명의 체형보정기능을 가지는 피복은 적어도 웨이스트부분과 복부를 커버하는 피복으로써, 복부를 커버하는 복부천의 웨이스트 위치보다 조금 하방의 대략 복부중앙근방 겨드랑이에서 출발하여 피복본체의 적어도 겨드랑이근방에 이르는 적어도 길이방향으로 신축가능한 조금 넓은 폭의 좌우 제1 스트레치성 띠상체를 구비하고, 상기 제1 스트레치성 띠상체는 전부에서 겨드랑이근방에 이르는데 따라 상방으로 경사져 겨드랑이근방까지 대략 웨이스트 위치 근방의 높이에 이르고, 또한 상기 복부천의 웨이스트위치 근방겨드랑이에서 대략 웨이스트 위치를 따라 피복본체의 겨드랑이근방에 이르는 적어도 길이방향에 대해 신축가능한 조금 넓은폭으로 좌우의 제2 스트레치성 띠상체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체형보정기능을 가지는 의복이다.

[0011] 본 발명의 피복에 있어서는, 제1 스트레치성 띠상체가 조금 넓은폭이고 주로 제1 스트레치성 띠상체가 복부천을 그 양측에서 겨드랑이가 경사진 상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작용을 하므로, 가압 쾌적 부분인 중복부에서 하복부에 압력이 충분히 생기고, 또한 위 하부에 상당하는 부분에는 그다지 압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웨이스트의 사이드를 주로 조금 넓은폭의 제2 스트레치성 띠상체로 압압하므로, 웨이스트 겨드랑이의 군살의 처짐을 억제할 수 있어 웨이스트라인도 날씬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보정할 수 있다. 또한 제1과 제2 스트레치성 띠상체는 중첩에 의해 대략 V자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안정되고 복부천에 제1과 제2 스트레치성 띠상체의 신축파워가 생겨 겨드랑이측도 V자의 중첩으로 넓게 써포트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는 하복부에서 웨이스트 겨드랑이까지 이르는 방향으로 충분한 압력이 효율적으로 생기고, 복부와 웨이스트 겨드랑이부의 군살을 형태좋게 가압하고, 하복부를 포함하는 복부와 웨이스트 부분의 형상을 보다 날씬하고 아름답게 보정할 수 있으며, 또한 위 하방부분에는 그다지 압력이 생기지 않아 착용감의 저하가 적은 체형 보정기능을

가지는 피복을 제공할 수 있다.

[0041] 본 발명의 피복에 이용되는 제1 스트레치성 띠상체는 복부천의 웨이스트위치보다 조금 아래쪽의 대략 복부 중앙부 근방 겨드랑이에서 출발하여 피복본체의 적어도 겨드랑이근방까지 이르고, 겨드랑이근방에서 대략 웨이스트 위치 근방의 높이가 되도록 전부에서 겨드랑이 근방방향으로 상방으로 기울어지고, 보다 바람직한 것은 더 후중심의 웨이스트 위치까지 연장되는 것이 보다 우수한 신축파워를 부여하고, 보다 날씬한 복부와 겨드랑이웨이스트의 아름다운 형태를 보정하는 보정기능을 발휘하므로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 제1스트레치성 띠상체는 전축의 복부천의 겨드랑이에서 점차 상방으로 경사지는 후중심부에서웨이스트 위치의 높이가 되어도 된다. 또한 물론 필요에 따라 제1스트레치성 띠상체는 피복의 겨드랑이근방과 후중심부 사이의 임의의 위치까지의 길이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발명 2에는 복부천을 양측에서 당겨 몸매를 보정하는 기능을 하는 제1 스트레치성 띠상체가 개시되어 있으므로, 선행발명 2는 차이점 2, 3에 해당하는 구성과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 위와 같은 특징으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작용효과(앞면을 옆구리 쪽으로 당기고 옆구리 군살에 대하여 보정하는 효과) 역시동일하게 달성할 수 있다.

선행발명 1와 선행발명 2는 체형 보정용 속옷에 관한 것으로 기술분야가 유사하고, 복부와 허리를 보정하고자 한다는 기술적 과제가 동일하므로, 선행발명 1의 캐미솔에 허리와 배를 눌러주는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선행발명 2의 제1 스트레치성 띠상체를 도입할 동기가 충분하고, 위와 같이 선행발명 2를 선행발명 1에 적용하는 구성을 도입하는 데 어떠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보정용 속 옷 분야에서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을 기초로 하여 여기에 선행발명 2에 개 시된 '제1 스트레치성 띠상체'를 쉽게 결합하여 차이점 3을 극복하고 이 사건 제1항 특 허발명 구성요소 3의 압박 띠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압박 띠는 뒷면(200)과 측면(300) 사이에 일체로 이루어지게 형성되는데, 압박 띠가 앞면(100)의 양쪽 테두리에 일체로 형성되면서 압박 띠의 허리 부분 형성 위치로인하여 뒷면(200) 및 측면(300)은 상하 두 개로 나누어질 것이므로, 위와 같이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면 차이점 2를 극복하고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

(3) 차이점 4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내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에서 11을 결합하여 차이점 4를 극복하고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개)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앞면은 가슴과 배 그리고 복부 전체에 걸쳐 압박하여 신체 전반을 압박하고, 측면은 옆구리 쪽으로 몰리는 군살을 압박하며, 압박 띠는 허리선을 압박하는데, 특히 앞면은 압박 띠를 통해 양쪽 옆구리로 당겨지게 구성하면서 양쪽으로 잘 당겨지도록 압박 띠의 압박하는 힘보다 약하게 제작하고, 통상적으로 군살이 많은 붙는 옆구리 쪽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하여 측면의 압박하는 힘은 앞면보다 강하고 압박 띠보다 약하게 구성하며, 허리선이 더욱 독보이도록 압박 띠를 가장 강하게 압박할 수 있게 구성함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0031] 특히, 본 발명은 이 압박 띠(400)가 가장 센 압박력으로 앞면(100)을 옆구리 쪽

으로 당기게 하여 앞면(100)이 가슴과 배 그리고 복부 전체에 걸쳐 압박하게 하여 신체 전반에 걸쳐 압박 효과를 통해 몸매를 보정하는 효과를 얻고, 또한 이 앞면(100)보다 강한 세기로 옆구리와 그 아래를 압박할 수 있게 측면(300)을 제작하여 옆구리 군살에 대한 보정효과를 높이며, 가장 강하게 압박하는 압박 띠(400)를 통해 허리선이 더욱 돋보이도록 보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0035]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u>앞면(100)은, 후술할 압박 띠(400)를 통해 양쪽 옆구리로 당겨지게 구성하는데,</u> 이때 <u>양쪽으로 잘 당겨지도록 이 압박 띠(400)의압박하는 힘보다 약하게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u> 이는 이 압박 띠(400)가 강한 힘으로앞면(100)을 양쪽에서 잡아서 양쪽 옆구리 쪽으로 당겨지게 하여 앞면(100)이 가슴과 배그리고 복부 전체에 걸쳐 골고루 보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0040]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서브 측면(300a, 300b)은 압박 띠(400)와 한쪽 면이 일체로 맞닿게 형성하고, 특히 옆구리와 골반 부분을 압박하는 힘은 앞면(100)보다 강하고 압박 띠(400)보다 약하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u>통상적으로 군살이 옆</u> 구리와 그 아래쪽에 많이 붙고 앞면(100) 때문에 옆구리 쪽으로 몰리는 군살에 대하여 조금 강하게 압박할 수 있게 하여 군살을 보정할 수 있게 하여 몸매 보정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0043] 특히,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압박 띠(400)는 앞면(100)과 측면 (300)보다 가장 강하게 압박할 수 있게 구성함으로써, 앞면(100)을 강하게 옆구리 쪽으로 당겨 몸매 전체에 대한 보정 효과와 더불어 이 압박 띠(400)가 허리선을 따라 압박하여 허리선이 더욱 돋보이도록 보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편, 아래와 같은 선행발명 2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2의 체형보정기능을 가지는 피복은 복부천, 즉 앞면은 피복 가로방향으로 신축되지 않거나 비교적 신축이 적은 천이, 그리고 복부천 이외의 피복 본체의 다른 부분의 천, 즉 측면 및 뒷면은 신축되는 천이, 제1 스트레치성 띠상체는 신축가능한 것이 바람직하여, 앞면보다 측면의 신축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1 스트레치성 띠상체는 복부 천을 그 양측에서 겨드랑이가 경사진 상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작용을 하는 신축가능한

것으로 복부천을 상방향으로 잡아당길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므로, 앞면, 측면, 뒷면과는 신축 측면에서 연관성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행발명 2의 명세서에는 앞면, 측면, 제1 스트레치성 띠상체의 신축의 순서나 신체를 압박하는 힘의 순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또는 암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선행발명 2의 명세서]

[0038] 이러한 본 발명의 피복에 있어서, 복부천 또는 필요에 따라 적어도 피복 가로방향으로 신축이 없던지 또는 비교적 신축이 적은 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부를 누르는 기능을 보다 강력하게 발휘하는데 적합하다. (후략)

[0040] 복부천 이외의 피복본체의 다른 부분의 천은 물론 피복의 종류에 따라 가슴 캡 그 이외등 미세한 부분은 다르지만,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옷천은 적어도 피복가로방향으로 신축을 가지는 천이 바람직하고, 물론 세로방향등 다른 방향으로도 신축을 가지는 투웨이나 멀티웨이스트레치성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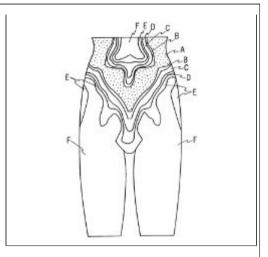
도 된다. 이와같이 복부천 이외의 피복본체의 다른 주요부분의 천을 적어도 피복가로방향으로 신축을 가지는 천으로 함으로써, 피복을 탈착하는 경우에 용이하게 가로방향으로 넓혀 탈착할 수 있으므로, 탈착이 용이함과 동시에, 신축력에 의해 신체에 딱 맞아 바람직하다. (후략)

[0048] 제1 스트레치성 띠상체 및 제2 스트레치성 띠상체는 적어도 길이방향으로 신축가능한 스트레치성 띠상체이고, 적어도 길이방향으로 신축가능하면 다른 방향으로는 비신축성이어도 신축성을 가져도 된다. 그리고 이 스트레치성 띠상체의 길이방향의 신축 파워는

소정 부분을 파워 업할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피복 본체를 구성하는 천중 적어도 피복가로방향으로 신축 을 가지는 천으로 구성되는 부분 천의 가로방향의 신 축파워와 대략 동등하던지 그보다 큰 신축파워를 가지

[도 27] 본 발명의 거들을 착용한 경우의 인체 전부측의 압 력분포를 도시하는 도면 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보다 신축파워가 작은 것 도 사용할 수 있는데, 신축 파워가 작은 것은 조금 신 축된상태에서 피복본체에 부착하면 파워 업할 수도 있 다.

[0049] 스트레치성 띠상체가 상기 본체 천의 가로 방향의 신축파워와 동등해도 지장이 없는 것은 본체 천의 신축파워와 다중으로 신축파워가 발휘되어 스트 레치성 띠상체가 부착된 부분의 신축파워는 상술한 바 와같이 대략 2배가 되기 때문이다.



[0067] 상기 거들을 인체에 착용한 경우에 인체의

어느부분에 압력이 생기는지 압력센서를 이용한 의복설계용 압력분포장치에 의해 압력분포를 조사한 결과를 도27에 도시했다. 도27은 상기의 거들을 착용한 경우의 인체전부측의 압력분포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인체에 생기는 압력은 A부분이 가장 강하고 이하 B, C, D, E, F의 순으로 약해지고, F는 압력이 가장 약하던지 또는 압력이 생기지 않은 부분이다. 이도면에서도 알수있듯이, A랭크의 신축파워가 하복부에서 웨이스트 겨드랑이부까지 효율좋게 생기고, 또한 위의 하방부분에는 그다지 압력이 생기지 않아 착용감이 우수하고, 하복부도 포함해 복부에서 웨이스트 겨드랑이 부분에 이르는 인체의 형상을 보다 날씬하고 아름답게 보정할 수 있는 것을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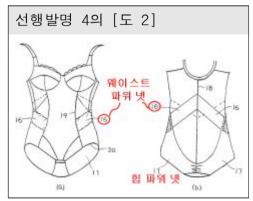
또한 선행발명 2의 명세서에는 "이러한 본 발명의 피복에 있어서, 복부천 또는 필요에 따라 이용되는 적어도 피복 가로방향으로 신축이 없던지 또는 비교적 신축이 적은 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부를 누르는 기능을 보다 강력하게 발휘하는데 적합하다(문단번호 [0038])."라고 기재되어 있어, 선행발명 2에서는 신축이 적은 천일수록 신체를 누르는 압박력이 보다 강하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선행발명 2의 경우 앞면이 측면이나 제1스트레치성 띠상체보다 신체를 압박하는 힘을 더 크게 구성하고 있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신체를 압박하는 힘의 순서와는 차이가 있다.

나아가 선행발명 2의 명세서로부터 제1 스트레치성 띠상체가 복부천을 그

양측에서 겨드랑이가 경사지는 상방향으로 잡아당겨, 즉 복부천의 하복부를 당겨줌으로써 하복부와 측면에 가장 강한 압력이 가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문단번호 [0067], [도면 27]), 선행발명 2의 제1 스트레치성 띠상체를 포함하는 체형보정기능을 갖는 피복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신체를 압박하는 힘의 정도를 도출하기 어렵고, 이는 선행발명 1과 2를 결합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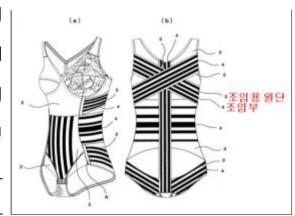
(i) 원고는 선행발명 4 내지 6, 9에는 신체를 압박하는 힘을 앞면 또는 측면(압박띠의 순으로 강하게 형성하는 것이, 선행발명 7, 8, 10, 11에는 신체를 압박하는 힘을 앞면(측면의 순으로 강하게 형성하는 것이 개시되어 있어 선행발명 4에서 6, 9 중 어느 하나와 선행발명 7, 8, 10, 11 중 어느 하나를 결합하여 차이점 4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먼저 선행발명 4에서 6, 9에는 이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압박 띠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없다. 즉,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압박 띠는띠 형상으로 앞면의 양쪽 테두리에 일체로 형성되면서 허리 부분을 감싸는 구조로 앞면을 옆구리 쪽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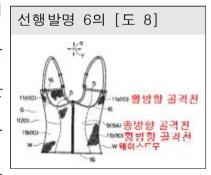


로 당겨 몸매 전체에 대한 보정을 수행하는 구성인데, 선행발명 4에서 6, 9의 명세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압박 띠에 대응하는 구성이 앞면을 옆구리 쪽으로 당기는지와 관련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선행발명 4의 도 2와 '웨이스트부에 파워 넷을 배치하고, … 파워 넷은 신축성이 뛰어난 원단이 사용되고, … 잘록한 웨이스트를 구현할 수있'다는 명세서 기재(문단번호 [0010] 내지 선행발명 5의 [도 4]

[0012]), 선행발명 5의 도 4와 '웨이스트 부분의 가장 가늘게 보정하고자 하는 잘록한 부분에 폭(H)이 큰 조임부(4)를 배치'한다는 명세서 기재(문단번호 [0025]), 선행발명 6의 도 8과 '횡 방향 골격천(11b)은 종방향 골격천(9)을 중앙으로 하여 좌우의 옆구리로부터 웨이스트부(W)를



거쳐 뒷길(14)의 등부에 걸쳐 마련됨으로써 군살이 붙기 쉬운 좌우의 옆구리로부터 등부에 걸친 허리둘레의 군살을 좌우 균형하여 조여 체형을 정돈'한다는 명세서 기재(문단 번호 [0017])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압박 띠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4에서 6, 9의 구성요소가 앞면을 옆구리 쪽으로



당긴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선행발명 9의 신축띠는 앞면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속옷의 내면 또는 외면 둘레 전체에 걸쳐 부착되는 것이므로(문단번호 [0036], [0039], [도 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압박 띠와는 다르다.

- ② 선행발명 4에서 6, 9에 제1항 특허발명의 압박 띠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선행발명 4에서 6, 9로부터 신체를 압박하는 힘을 앞면 또는 측면<압박띠의 순으로 강하게 형성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고, 선행발명 4에서 6, 9 중 어느 하나와 선행발명 7, 8, 10, 11 중 어느 하나를 결합하여도 차이점 4를 쉽게 극복할 수는 없다.
- ③ 선행발명 7, 8, 10, 11에는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압박 띠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차이점 4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2에서 10 중 하나 이상을 결합하더라도 쉽게 도출할 수 없다.

(i)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 2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선행발명 1, 8, 10, 11에 개시되어 있고, 구성요소 3, 4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선행발명 2에서 11에 개시되어 있으므로, 선행발명 1에서 11을 적절히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 3에서 11에는 제1항 특허발명의 압박 띠에 대응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고, 선행발명 2로부터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신체를 압박하는 힘의 순서를 쉽게 도출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에서 1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

라) 검토 결과 정리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서 11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2. 3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종속항 발명이고,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은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 중 어느 한 항의 종속항 발명으로, 모두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선행발명 1에서 11에 의하여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2, 3항특허발명 역시 선행발명 1에서 1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혀 있고, 이 사건 제1, 2, 3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서 11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임경옥

판사 윤재필

[별지 1]

선행발명 1

발명의 명칭: 캐미솔

【 디자인의 설명】

- 1. 재질은 합성섬유사임.
- 2. 체형 보정용으로 착용하는 것임.
- 3. 가슴 아래를 두르는 엠보싱 조직과 세로 줄무늬 조직은 2중 편직되어 가슴을 받쳐주고 올려주는 효과가 뛰어남.
- 4. 참고도 1의 A부분은 등부분에도 대칭되게 존재하며, 헐겁고 주름지게 편직되어 신축성 소재간의 잡아당김을 완충하는 역할을 함.
- 5. 신체형상에 따라 입체적으로 편직되어 착용감이 좋으며, 가슴을 올려주고 허리와 배를 눌러주는 효과가 뛰어남.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

본원 디자인은 독창적인 형상과 모양의 결합으로 새로운 미감이 창출되도록 창작한 것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별지 2]

선행발명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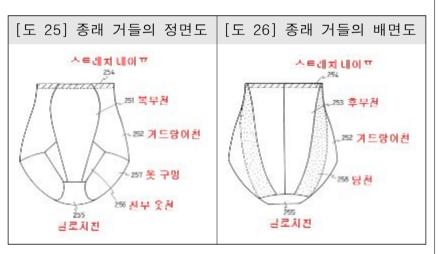
발명의 명칭: 체형보정기능을 가지는 피복

가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체형보정기능을 가지는 피복에 관한 것으로, 특히, 복부에서 겨드랑이 웨이스트부분의 군살을 날씬한 형태로 보정하는데 유용한 체형보정기능을 가지는 피복에 관한 것이다.

내 배경기술

[0003] 주로 복부의 팽출을 가압하여 복부의 형태를 보정하는 기능을 가지는 종래의 피복의 일예로써 거들을 들어 설명한다. 종래의 거들의 대표적 일예의 전측에서 본 정면도를 도25에, 또한 후측인 배면도를 도26에 도시했다.



[0005] 그리고, 통상 복부 군살의 팽출을 가압하기 위해, 복부천(251)은 적어도 거들 가로방향으로는 신축이 없 던지 또는 신축이 비교적 작은 천이 사용되던지 혹은 그 내측 또는 외측에 적어도 거들 가로방향으로는 신축이 없던지 또는 신축이 비교적 적은 천이 당천으로써 이용된다.

[0006] 이 예에서는 외측은 피복 세로 및 가로방향으로 신축성을 가지는 천을 이용하여 그 외측에 피복 세로 및 가로방향으로 비신축성의 마키젯등의 천을 배접(옷안에 천을 덧붙여 튼튼하게 함)하고 있다. 또한, 앞겨드랑이에서 뒷겨드랑이를 커버하는 겨드랑이천(252)이나 후부천(253)에는 적어도 거들 가로방향으로 신축성의 천이 이용되고, 또한, 필요에 따라 힙 업기능등을 부여하기 위해, 겨드랑이천(252)등 또는 그 일부에는 신축 파워를 부여하기 위한 당천이 이용되거나, 겨드랑이천(252)자체를 신축 파워가 강한 천을 이용하는 것도행해진다. 그리고 도25, 26에 도시한 예에서는 앞겨드랑이에서 뒷겨드랑이를 커버하는 겨드랑이천(252)의 뒷겨드랑이의 일부의 내측에 힙 업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피복 세로방향

가로방향으로 조금 신축을 가지는 당천(258)이 배접되어 있다. 또한 이 예에 있어서의 당천(258)은 주로 일방향으로 신축성을 가지는 파워 네트등의 편물을 그 편물이 편물 본래의 가로, 세로방향에 대해 경사방향이 되도록 사용하여 배접하고 있고, 그 결과, 배접천이 피 복의 세로 및 가로방향으로 모두 조금 신축되도록 부착되어 있다.

[0007] 복부의 군살의 팽출을 가압하는 기능은 복부천(251)의 하부는 클로치로 고정되며, 상부는 스트레치 테이프(254)로 조이고, 좌우측은 겨드랑이천(252)등의 신축파워로 조이며, 전후좌우에서 종합적으로 복부천의 주위를 조임으로써, 복부의 군살의 팽출을 억제한다.

[0008]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거들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많이 조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복부에 충분한 압압력이 작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위의 일 부 하방부분에 압압력이 작용하여 착용감이 좋지않은 문제가 있다. 본 발명자가 이러한 거들을 인체에 착용 한 경우에 인체의 어느 부분에 압력이 생기는지 압력 센서를 이용한 의복설계용 압력분포장치에 의해 압력 분포를 조사한 결과를 도28에 도시했다. 도28은 상기 종래의 거들을 착용한 경우의 인체 전부측의 압력분 포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인체에 걸리는 압력은 A부 분이 가장 강하고 이하 B, C, D, E, F순으로 약해지 고, F는 압력이 가장 약하던지 또는 압력이 생기지 않은 부분이다. 이 도면에서도 알수 있듯이, A, B의

[도 28] 종래의 거들을 착용한 경우의 인체 전부측의 압력 분포를 도시하는 도면

랭크는 복부의 일부이고, 이와같은 압력분포에서는 일단 복부형상의 보정은 가능하지만, 일정한 압력이 분산되어 있으며, 보다 날씬한 보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충분하지는 않다. 또한, 웨이스트 겨드랑이측도 충분한 압력이 생기지 않는다. 또한 위의 하방부분에는 C랭크의 압력이 생기고, 위를 압박하여 착용감이 저하하는 문제가 있다. 하복부까지 압력이생기도록 전체의 파워를 높게한 경우에는 위의 하방부분 그 이외 불필요한 부분의 압력도높아지고, 또한 전체적으로 압력이 분산되어 버리므로, 착용감이 나빠지는 것에 비해 그다지 큰 보정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0009] 본 발명은 하복부에서 웨이스트 겨드랑이까지 이르는 방향에 충분한 압력이 효율좋게 생기고, 복부와 웨이스트 겨드랑이부의 군살을 형태좋게 가압하며, 하복부를 포함하는 복부에서 웨이스트부분의 형상을 보다 날씬하고 아름답게 보정할 수 있고, 또한 위 하방

부분에는 그다지 압력이 생기지 않아 착용감의 저하가 적은 체형보정기능을 가지는 피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 발명의 상세한 설명

[0010] (1)본 발명의 체형보정기능을 가지는 피복은 적어도 웨이스트부분과 복부를 커 버하는 피복으로써, 복부를 커버하는 복부천의 웨이스트 위치보다 조금 하방의 대략 복부 중앙근방 겨드랑이에서 출발하여 피복본체의 적어도 겨드랑이근방에 이르는 적어도 길이방향으로 신축가능한 조금 넓은 폭의 좌우 제1 스트레치성 띠상체를 구비하고, 상기 제1 스트레치성 띠상체는 전부에서 겨드랑이근방에 이르는데 따라 상방으로 경사져 겨드랑이근방까지 대략 웨이스트 위치 근방의 높이에 이르고, 또한 상기 복부천의 웨이스트위치 근방겨드랑이에서 대략 웨이스트 위치를 따라 피복본체의 겨드랑이근방에 이르는 적어도 길이방향에 대해 신축가능한 조금 넓은폭으로 좌우의 제2 스트레치성 띠상체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체형보정기능을 가지는 의복이다.

[0011] 본 발명의 피복에 있어서는, 제1 스트레치성 띠상체가 조금 넓은폭이고 주로 제1 스트레치성 띠상체가 복부천을 그 양측에서 겨드랑이가 경사진 상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작용을 하므로, 가압 쾌적 부분인 중복부에서 하복부에 압력이 충분히 생기고, 또한 위 하부에 상당하는 부분에는 그다지 압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웨이스트의 사이드를 주로 조금 넓은폭의 제2 스트레치성 띠상체로 압압하므로, 웨이스트 겨드랑이의 군살의 처짐을 억제할 수 있어 웨이스트라인도 날씬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보정할 수 있다. 또한 제1과 제2 스트레치성 띠상체의 신축파워가 생겨 겨드랑이측도 V자의 중첩으로 넓게 써포트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는 하복부에서 웨이스트 겨드랑이까지 이르는 방향으로 충분한압력이 효율적으로 생기고, 복부와 웨이스트 겨드랑이부의 군살을 형태좋게 가압하고, 하복부를 포함하는 복부와 웨이스트 부분의 형상을 보다 날씬하고 아름답게 보정할 수 있으며, 또한 위 하방부분에는 그다지 압력이 생기지 않아 착용감의 저하가 적은 체형 보정기능을 가지는 피복을 제공할 수 있다.

[0037] 본 발명은 적어도 웨이스트 부분과 복부를 커버하는 피복에 적용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예를들면 거들, 팬티 또는 숏츠, 보디슈트, 웨이스트 닙퍼, 비스체, 롱라인 브래지어, 캐미솔, 수영복, 스패츠, 타이트스커트, 슬랙스, 탱거 숏츠 또는 탱거 거들등을 들 수있다. (후략)

[0038] 이러한 본 발명의 피복에 있어서, 복부천 또는 필요에 따라 이용되는 그 바대는 적어도 피복 가로방향으로 신축이 없던지 또는 비교적 신축이 적은 천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 복부를 누르는 기능을 보다 강력하게 발휘하는데 적합하다. (후략)

[0040] 복부천 이외의 피복본체의 다른 부분의 천은 물론 피복의 종류에 따라 가슴 캡 그 이외등 미세한 부분은 다르지만,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옷천은 적어도 피복가로방향으로 신축을 가지는 천이 바람직하고, 물론 세로방향등 다른 방향으로도 신축을 가지는 투웨이나 멀티웨이스트레치성이라도 된다. 이와같이 복부천 이외의 피복본체의 다른 주요부분의 천을 적어도 피복가로방향으로 신축을 가지는 천으로 함으로써, 피복을 탈착하는 경우에 용이하게 가로방향으로 넓혀 탈착할 수 있으므로, 탈착이 용이함과 동시에, 신축력에 의해 신체에 딱 맞아 바람직하다. (후략)

[0041] 본 발명의 피복에 이용되는 제1 스트레치성 띠상체는 복부천의 웨이스트위치보다 조금 아래쪽의 대략 복부 중앙부 근방 겨드랑이에서 출발하여 피복본체의 적어도 겨드랑이근방까지 이르고, 겨드랑이근방에서 대략 웨이스트 위치 근방의 높이가 되도록 전부에서 겨드랑이 근방방향으로 상방으로 기울어지고, 보다 바람직한 것은 더 후중심의 웨이스트 위치까지 연장되는 것이 보다 우수한 신축파워를 부여하고, 보다 날씬한 복부와 겨드랑이웨이스트의 아름다운 형태를 보정하는 보정기능을 발휘하므로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 제1스트레치성 띠상체는 전측의 복부천의 겨드랑이에서 점차 상방으로 경사지는 후중심부에서웨이스트 위치의 높이가 되어도 된다. 또한 물론 필요에 따라 제1스트레치성 띠상체는 피복의 겨드랑이근방과 후중심부 사이의 임의의 위치까지의 길이로 할 수 있다.

[0042] 본 발명의 피복에 이용되는 제2 스트레치성 띠상체는 상기 복부천의 웨이스트위치 근방 겨드랑이에서 대략 웨이스트위치를 따라 피복본체의 겨드랑이 근방에 이르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특히 제2 스트레치성 띠상체는 조금 느슨하게 부착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렇게함으로써, 제1 스트레치성 띠상체보다 그 신축파워가 약간 약해지므로, 겨드랑이 웨이스트의 군살을 제1 스트레치성 띠상체보다 약하게 압압하여 겨드랑이 웨이스트에서 삐져나온 군살의 형태를 완만한형으로 아름답게 보정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 또한 제2 스트레치성 띠상체보다 약한 시축 파워를 가지는 스트레치성 띠상체로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또한 제2 스트레치성 띠상체보다 약한 신축 파워를 가지는 스트레치성 띠상체로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또한 제2 스트레치성 띠상체를 느슨하게 부착하고 그 신축파워가 제1 스트레치성 띠상체보다 약한 신축 파워를 가지는 스트레치성 띠상체로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또한 제2 스트레치성 띠상체를 느슨하게 부착하고 그 신축파워가 제1 스트레치성 띠상체보다 약한 신축 파워를 가지는 스트레치성 띠상체로 구성해도 된다. 제2 스트레치성 띠상체는 대략 웨이스트위치를 따라 설치되어 있고, 복부천의 웨이스트 위치 근방겨드랑이에서 피복본체의 겨드랑이근방에 이르는 부분까지를 커버하도록 설치되면 충분하고, 또한 겨드랑이근방으로부터 후중심까지 연장하여 설치할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은 매우강한 파워가 생겨도 오히려 착용감의 저하로 연결될 염려가 있다. 물론 겨드랑이근방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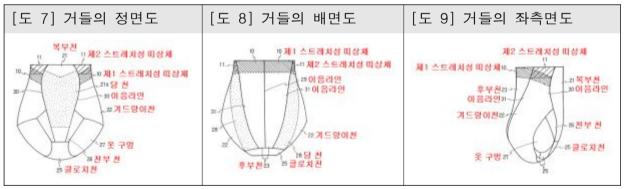
인체의 직선가로보다 약간 뒤까지 연장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이고, 약간 직선가로보다 조금 뒤까지 연장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0048] 제1 스트레치성 띠상체 및 제2 스트레치성 띠상체는 적어도 길이방향으로 신축가능한 스트레치성 띠상체이고, 적어도 길이방향으로 신축가능하면 다른 방향으로는 비신축성이어도 신축성을 가져도 된다. 그리고 이 스트레치성 띠상체의 길이방향의 신축 파워는 소정 부분을 파워 업할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피복본체를 구성하는 천중 적어도 피복가로 방향으로 신축을 가지는 천으로 구성되는 부분 천의 가로방향의 신축파워와 대략 동등하던지 그보다 큰 신축파워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보다 신축파워가 작은 것도 사용할 수 있는데, 신축 파워가 작은 것은 조금 신축된상태에서 피복본체에 부착하면 파워 업할수도 있다.

[0049] 스트레치성 띠상체가 상기 본체 천의 가로방향의 신축파워와 동등해도 지장이 없는 것은 본체 천의 신축파워와 다중으로 신축파워가 발휘되어 스트레치성 띠상체가 부착된 부분의 신축파워는 상술한 바와같이 대략 2배가 되기 때문이다.

[0052] 이하, 본 발명의 피복을 구체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본 발명은 이 구체예만에 한 정되는 것은 아니다.

[0060] 다음에 도7~도9에 본 발명의 체형보정기능을 가지는 피복의 일예인 거들을 도시했다. 도7이 전측에서 본 도면(정면도), 도8이 후측에서 본 도면(배면도), 도9가 좌측면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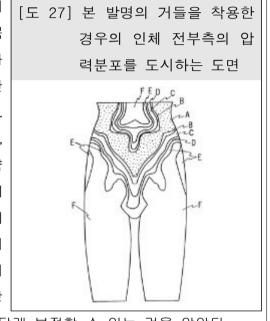


[0063] 10이 거들의 본체 천의 내측에 배접된 제1 스트레치성 띠상체이고, 제1 스트레치성 띠상체(10)는 이 양태에서 복부천(21)의 웨이스트위치보다 조금 하방의 대략 복부중앙부 근방 겨드랑이(이음라인(30)위)에 그 끝이 봉제되어 이 부분에서 출발하여 거들 본체의 겨드랑이를 통과하여 다시 뒤중심의 웨이스트위치까지 경사져 연장되어 있고, 대략 겨드랑이근방에서 웨이스트위치 근방의 높이에 이른다. 그리고 제1 스트레치성 띠상체(10)이외의단부는 뒤중심의 이음라인(29)의 위치에서 상호 이어짐과 동시에 그 위치에서 거들 본체천

의 후부천(23)에 봉제되어 있다. (후략)

[0066] 이 거들은 하복부에서 웨이스트 겨드랑이까지 이르는 방향으로 충분한 압력이 효율좋게 생기고, 하복부를 포함하는 복부와 웨이스트 겨드랑이부의 군살을 형태좋게 가압하고, 하복부에서 웨이스트 겨드랑이부분에 이르는 복부와 웨이스트부분의 형상을 보다 날씬하고 아름답게 보정할 수 있고, 또한 위의 하방부분에는 압력이 생기지 않아 착용감이 우수했다.

[0067] 상기 거들을 인체에 착용한 경우에 인체의 어느부분에 압력이 생기는지 압력센서를 이용한 의복설계용 압력분포장치에 의해 압력분포를 조사한 결과를 도27에 도시했다. 도27은 상기의 거들을 착용한경우의 인체 전부측의 압력분포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인체에 생기는 압력은 A부분이 가장 강하고 이하 B, C, D, E, F의 순으로 약해지고, F는 압력이 가장 약하던지 또는 압력이 생기지 않은 부분이다. 이 도면에서도 알수있듯이, A랭크의 신축파워가 하복부에서 웨이스트 겨드랑이부까지 효율좋게 생기고, 또한 위의하방부분에는 그다지 압력이 생기지 않아 착용감이우수하고, 하복부도 포함해 복부에서 웨이스트 겨드랑



이 부분에 이르는 인체의 형상을 보다 날씬하고 아름답게 보정할 수 있는 것을 알았다.

[0091] 다음에 도22~도24에 본 발명의 체형보정기능을 가지는 피복의 일예인 신체에 딱맞는 타입의 캐미솔을 도시했다. 도22가 전측에서 본 도면(정면도), 도23이 후측에서 본 도면(배면도), 도24가 죄측면도이다.



[0093] 그리고, 복부천(21)은 적어도 캐미솔 가로방향으로는 신축이 없던지 또는 비교적 신축이 적은 천이 이용되던지 혹은 그 내측 또는 외측에 적어도 캐미솔 가로방향으로는 신축이 없던지 또는 비교적 신축이 적은 천이 당 천로써 이용된다. (중략) 또한, 앞겨드랑이천(22a), 뒷겨드랑이천(22b)이나 후부천(23)에는 적어도 캐미솔 가로방향으로 신축성의천이 이용된다.

[0094] 10이 캐미솔의 본체천의 내측에 배접된 제1 스트레치성 띠상체이고, 제1 스트레치성 띠상체(10)는 이 양태에서는 후부천(21)의 웨이스트위치보다 조금 하방의 대략 복부중앙부 근방 겨드랑이(이음라인(30)위)에 그 끝이 봉제되어 이 부분에서 출발하여 캐미솔본체의 겨드랑이를 통과하여 다시 후중심의 웨이스트위치까지 경사지게 연장되어 있고, 대략 겨드랑이 근방에서 웨이스트 위치 근방의 높이에 이른다. 그리고 제1 스트레치성 띠상체(10)의 다른 단부는 후중심의 이음라인(29)의 위치에서 상호 이어짐과 동시에 그 위치에서 캐미솔 본체천의 후부천(23)에 봉제되어 있다. 또한, 이 양태에서는 제1 스트레치성 띠상체(10)의 상변부와 양단부는 본체천에 봉제되는데 하변부는 본체천에 봉제되어 있지 않다.

[0095] 다음에 11이 이 캐미솔의 본체천의 내측에 배접된 제2 스트레치성 띠상체이고, 제2 스트레치성 띠상체(11)는 상기 복부천(21)의 웨이스트 위치 근방 겨드랑이(이음라인 (30)위)에 그 끝이 봉제되어 이 부분에서 대략 웨이스트위치를 따라 피복본체의 겨드랑이 근방에 이른다. 이 양태의 경우는 피복본체의 직선가로에서 약간 후측까지 연장되어 있다. [0096] (전략) 또한 이 양태에 있어서는 제1 및 제2 스트레치성 띠상체로써, 폴리우레탄 섬유를 넣은 신축성 천로 이루어지는 폭5cm의 스트레치 테이프를 이용했다.

[0097] 이 캐미솔은 하복부에서 웨이스트 겨드랑이에 이르는 방향으로 충분한 압력이 효율좋게 생기고 하복부를 포함하는 복부와 웨이스트 겨드랑이부의 군살을 형태좋게 가압하고, 하복부에서 웨이스트 겨드랑이 부분에 이르는 복부와 웨이스트 부분의 형상을 보다 날씬하고 아름답게 보정할 수 있고, 또한 위의 하방부분에 그다지 압력이 생기지 않아 착용감이 우수했다.

[별지 3]

선행발명 3

발명의 명칭: 한방 건강 코르셋

개 기술분야

[0001] 본 고안은 여성 속옷 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복합 구조의 한방 건강 코르셋에 관한 것이다.

대 배경기술

[0002] 사람들의 생활 조건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체형미는 갈수록 패셔너블한 여성이 추구하는 바가 되었으며, 점점 더 많은 몸매 보정 제품이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기존의 일반 몸매 보정 제품은 신체의 특정 부위만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국부적인 몸매 보정 효과만 일으킬 뿐, 기능이 완전하지 않아, 몸매 보정 속옷의 모든 기능을 포용하여, 일체형으로 가슴을 받쳐주고, 허리를 날씬하게 하며 배를 집어넣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몸매 보정 제품은 단지 몸매 보정만을 출발점으로 한 것이기도 하므로, 착용과 동시에 건강 관리 기능을 발휘하는 효과를 갖추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은 건강 관리 기능을 갖는 코르셋을 새로 구매해야 하므로,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한다.

대 실용신안내용

[0003] 본 고안의 목적은 상기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건강 관리 기능을 동시에 갖춘 코르셋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다.

[0004]~[0005] 상기 기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기술방안은 다음과 같다: 좌우컵 및 어깨끈을 포함하는 한방 건강 코르셋에 있어서, 좌우 컵 내면의 하부에 모두 중간층이 설치되고, 중간층의 적어도 일측에 개구가 설치되어 안주머니를 형성하며, 안주머니에한약재 약심이 장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06] 상기 한방 건강 코르셋에 있어서, 좌우 컵 하부에 웨이스트 니퍼가 봉합되며, 웨이스트 니퍼는 S형 곡선으로 설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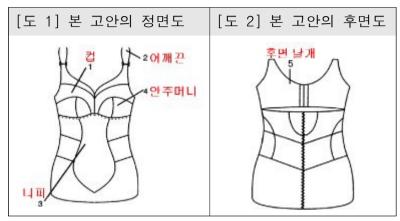
[0010] 본 고안은 구조가 단순하며, 유익한 효과는 다음과 같다:

[0014] 4. 본 고안의 웨이스트 니퍼는 S 형 곡선 설계를 채택하여 배를 가볍게 넣어주면서 아름다운 신체 곡선을 부각시킨다.

[0015] 5. 본 고안은 컵 안주머니에 한약재 약심을 장착하여, 착용 시 유방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약심을 꺼내어 본 고안을 세탁하거나 약심을 교체할 수 있어, 몸매 보정과 한방 건강관리를 일체화하여 다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다.

래 상세한 실시 방식

[0019]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중략) 좌우 컵(1) 내면의 하부에 모두 중간층이 설치되고, 중간층의 적어도 일측에 개구가 설치되어 안주머니(4)를 형성하 며, 안주머니에 한약재 약심이 장착된다. 한약재 약심은 10여종 의 귀한 한약재로 제조되며, 본 제품을 정기적으로 착용하면 여



성의 유방에 매우 우수한 건강 관리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필요한 소비자의 경우, 안주머니(4) 내에 가슴 패드를 장착할 수도 있다.

[0021] 본 고안의 좌우 컵(1) 하부에 S형 곡선의 웨이스트 니퍼(3)가 봉합되며, 배를 가볍게 넣어주면서 아름다운 신체 곡선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앞배 부위는 다층으로 설계되어, 생리 기간 동안 착용하면 효과적으로 보온해줄 수 있어, 더욱 편안하다.

[별지 4]

선행발명 4

발명의 명칭: 보디슈트

개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여성용 속옷으로서 프로포션을 정돈하기 위한 보디슈트에 관한 것이다.

대 배경기술

[0007] 그런데, 종래의 보디슈트는 상반신을 구속함으로써 아름다운 체형을 유지함과 동시에, 아름다운 체형이 되도록 교정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체형은 다양하고, 그 때문에 규격화된 보디슈트에서는 부분적으로 체형에 적합하지 않고, 보디슈트로서 도움이 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다. 특히, 웨이스트부에 군살이 붙고, 웨이스트의 쿠비레가 없어져 버리는 체형이 많고, 이러한 체형으로 규격화된 표준 보디슈트를 착용한 것은 거북하다.

때 발명이 해결하고자하는 과제

[0008] 이와 같이, 종래의 보디슈트에는 상기와 같은 문제가 있다. 본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는 이들 문제점이며, 상반신 전체를 균등하게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웨이스트부를 구속해 웨이스트의 쿠비레를 구현할 수 있음과 동시에, 힙을 들어 올리도록 한보디슈트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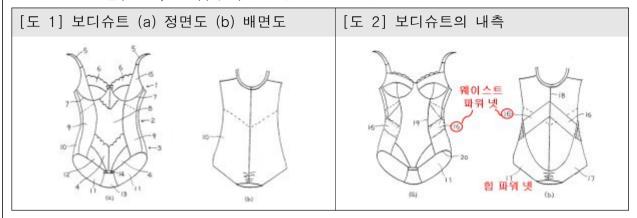
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0010]~[0011] 그런데, 본 발명에서는 웨이스트부에 파워 넷을 배치하고, 동일하게 힙부에도 파워 넷을 배치하고 있다. (중략) 이들 파워 넷은 신축성이 뛰어난 원단이 사용되고, 게다가, 그 파워 넷의 사이즈를 보디슈트 원단에 비교하여 약간 작게 하고, 보디슈트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파워 넷의 늘어남 쪽이 커지도록 하고 있다.

매 실시예

[0017]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보디슈트의 내측을 나타내고 있다. 즉, 상기 도 1의 보디슈트를 뒤집은 경우로서, 도 1의 겉쪽을 나타내고 있는 보디슈트는 종래의 것과 공통되어 있다. 그러나, 뒤집은 내측에는 웨이스트 파워 넷(16, 16)과 힙 파워 넷(17, 17)이 배치되어 있다. 그 웨이스트 파워 넷(16, 16)은 소정 폭의 띠형 원단으로서 신축성이 뛰어나고, 그 일단은 뒷길부(10)의 중심축부(18)에 꿰매 붙여지고, 타단은 앞길부(8)의 외측 가장자리

가 되는 앞 옆길(side panel)(9, 9)과의 경계부에 꿰매 붙여져 있다.



[0018] 게다가, 뒷길부(10)의 중심축부(18)에 대한 꿰매 붙임 위치는 높고, 앞길부(8)의양 외측에 대한 꿰매 붙임 위치는 낮게 되어 있다. 따라서, 등부터 아랫배에 걸쳐 경사지게 배치됨과 아울러, 양단이 꿰매 붙여져 있을 뿐이며, 중간부는 프리한 상태가 되어, 보디슈트 원단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게다가, 그 웨이스트 파워 넷(16)은 그 길이 치수가 약간짧게 되어 있다. 보디슈트를 착용함으로써 그 보디슈트 원단에 비교하여 많이 신장되고, 그신장에 따라 신체를 꽉 조임·교정하는 작용을 이룬다.

[0019] 따라서, 웨이스트 파워 넷(16, 16)이 배치되는 웨이스트부는 다른 곳에 비교하여 그 구속력은 한층 높고, 잘록한 웨이스트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보디슈트 원단에 꿰매져 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웨이스트 파워 넷(16)의 위치를 약간 비켜 놓을 수 있고, 웨이스트부에 붙은 특히 신경이 쓰이는 군살을 구속·지지할 수 있다.

배 발명의 효과

[0012] 본 발명의 보디슈트는 내측에 파워 넷을 배치하고, 웨이스트부 및 힙부를 국부적으로 구속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잘록한 웨이스트를 구현할 수 있음과 아울러, 힙을 들어올리는 효과가 뛰어나다. 즉, 파워 넷은 신축성이 뛰어난 원단으로 구성되고, 게다가 사이즈가 보디슈트보다 약간 작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디슈트를 착용했을 때에는 파워 넷이신장됨으로써 웨이스트부 및 힙부가 국부적으로 단단히 조여질 수 있다. 게다가, 파워 넷은보디슈트 원단에 완전히 꿰매어져 결합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은 프리한 상태로 배치되기때문에, 그 위치를 어긋나게 하여 특히 신경이 쓰이거나 걱정되는 부분을 구속·지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별지 5]

선행발명 5

발명의 명칭: 보정 속옷 및 그 제조 방법

개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착용하는 것만으로 아름답고 균형 잡힌 체형으로 보정 가능한 속옷의 봉제 기술에 관한 것이다.

대 배경기술

[0004] 상기 이외에도 보정 속옷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기술이 제안되어 있지만, 이들의 보정 속옷은 신축력이 다른 복수의 원단 소재를 이용하거나, 다수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 행정·봉제 행정이 증가하고, 생산과정의 복잡화로 인해 고가격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체형의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개인 차이가 있고, 예를 들면, 웨이스트가신경이 쓰이는 경우에 있어서, 같은 허리 사이즈라도 지방량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강한보정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으면 약한 보정력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다. 또한, 위치적인문제로서 하복부가 신경이 쓰이는 사람도 있으면 옆구리부가 신경이 쓰이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많은 파트로 구성하지 않으면 보정력이 주어지지 않는 이들의 기술에서는, 상기 비용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고, 또한 보정력 및 보정 위치를 세세하게 변경하기 어렵다는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때 발명이 해결하고자하는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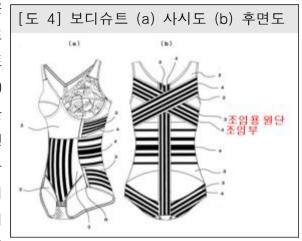
[0006] 그래서, 본 발명은 관계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속옷의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방향 및 필요한 보정력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저비용으로 제조 가능한 보정 속옷 기술의 제공을 도모하는 것이다.

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0007]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구항 1의 발명은, 사람의 체형에 보정력을 주는 조임부를 형설하기 위한 조임용 원단을 사용하는 보정 속옷의 제조 방법으로서, 그 조임용 원단은 신축성이 있는 단일 소재로 하고, 그 조임용 원단에 있어서, 보정력을 주고자 하는 곳 및 보정력을 주고자 하는 방향으로 여러 겹으로 접어 꺾어 띠 형상체를 형성하고, 이를 봉제하여 상기 조임부를 형설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보정 속옷의 제조 방법으로 하였다.

때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형태

[0025]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보정 속옷 및 그 제조 방법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설명도로서, 도 4(a)는 본 발명에 따른 기술을 보디슈트에 이용한 경우의 사시도를 나타내고, 도 4(b)는 본 발명에 따른 기술을 보디슈트에 이용한 경우의 후면도를 나타내고 있다. 도면에 나타낸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조임부(4)는 세로·가로·사선과 같은 모든 방향으로 형성하는 것이가능하다. 또한, 도면에서는 웨이스트 부분의가장 가늘게 보정하고자 하는 잘록한 부분에 폭



(H)이 큰 조임부(4)를 배치하고, 그 상하에 배치하는 조임부(4)는 폭(H)을 가늘게 하고, 나아가 그 상하에 배치하는 조임부(4)까지의 피치(P)를 크게 취한 실시 형태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배치 구성으로 함으로써, 웨이스트의 아름다운 잘록함을 형성하면서, 이 중심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보정력을 약하게 함으로써, 단차가 없는 자연스러운 보디라인을 만들어냄과 아울러, 불필요한 조임으로 인한 갑갑한 느낌(답답한 느낌)의 경감을 도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배 발명의 효과

[0010]~[0014] 본 발명에 따른 보정 속옷 및 그 제조 방법에 따르면, 필요에 따른 보정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착용감을 좋게 한 채로도 높은 조임 효과나 자세 교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보정 속옷 및 그 제조 방법에 따르면, 조임 수단이 속옷에 사용되는 단일 소재로만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재료 비용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다는 뛰어난 효과를 이룬다. 나아가, 본 발명에 따른 보정 속옷 및 그 제조 방법에 따르면, 체형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나 지방량의 개인차에 대응하여 보정력 및 보정 위치를 미세하게 변경하기가 용이한 보정 속옷을 제공할 수 있다는 뛰어난 효과를 이룬다. 나아가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보정 속옷 및 그 제조 방법에 따르면, 조임용 원단의 신축력이 그다지 높지 않아도 조임부의 폭이나 수를 조정함으로써 강한 보정력을 얻을 수 있다는 뛰어난 효과를 이룬다. 그리고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보정 속옷 및 그 제조 방법에 따르면, 디자인성을 해치는 일도 없이, 오히려 기능미라고도 할 수 있는 미관을 창출할 수 있다는 뛰어난 효과를 이룬다.

[별지 6]

선행발명 6

발명의 명칭: 파운데이션 속옷

개 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

[0001] 본 고안은 파운데이션 속옷에 관한 것으로, 예를 들면 보디슈트, 웨이스트 니퍼, 거들 등이고, 체형을 정확하게 정돈하고, 운동성과 장식성이 뛰어나며, 나아가서는 경량으로 하여 통기성을 좋게 한다.

대 고안이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

[0003] (전략) 종래의 보디슈트는, 브래지어부(b)와 보디슈트 본체(a)가 일체로 형성되 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 바스트의 형상, 치수를 고려해 사용자가 자 기의 바스트에 적합한 보디슈트를 선택하면, 보디슈트를 착용하는 경우에, 보디슈트 본체 (a)가 비좁아지거나. 또는 반대로 하반신 부분이 보디슈트 본체(a)에 대해 여유가 생겨 헐 겁게 되었다. 또한 보디슈트 본체(a)의 크기를 기준으로 보디슈트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이 번에는 브래지어부(b)가 바스트에 대해 비좁아지거나 헐겁게 되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확 하게 체형을 정돈할 수 할 수 없었다. 또한, 상기 종래의 보디슈트는, 예를 들면 나일론, 테 토론, 폴리에스테르 등의 합성 섬유로 이루어지는 신축천(c)을 신체 부위의 각 형상에 맞춰 재단한 복수개의 구성편(d1, d2, d3, …)을 꿰매 부착함으로써 조립되고, 보디슈트 본체(a) 의 신축천(c)의 이면의 소망 개소에는 신축성을 가지는 네트재로 형성되는 신축 보강편(e1, e2 …)이 지지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보디슈트를 착용했을 경우에 강한 결합력에 의해 신체를 전체적으로 단단히 조이는 것과, 보디슈트 자체는 전체가 두께가 두 껍게 형성되는 것으로부터 사용자는 보디슈트의 착용시에 위화감을 기억하고 있었다. 게다 가 상기 종래의 보디슈트는, 신체의 각 부위에 따라 체형을 정확하게 치밀하게 정돈하는 것 은 적합하지 않았다. 또한. 디자인적으로 장식성이 부족해. 살풍경했다. 나아가서는 보디슈 트의 중량도 비교적 무겁고, 신축천(c)으로 이루어지는 구성편(d1, d2, d3, …)의 이면에 지지되는 신축 보강편(e1, e2, …)이 중첩함으로써 형성되므로, 통기성이 떨어지고, 특히 여 름에는 화끈거리고 땀이 차거나 가려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굴신(굽히고 펴 기), 선회, 비틂 등의 운동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복부 측과 등 측에서는 대소 차이가 있 기 때문에, 보디슈트의 앞길 쪽과 뒷길 쪽에는 신체 부위에 적합한 신축성과 불신축성이 발 휘되는 요청이 있었다.

[0004] 본 고안은 상기 종래의 결점을 해결하고, 사용자는 브래지어와 보디슈트 본체와의 어느 쪽도 자기의 사용자의 체형에 적합해 위화감 없이 정확하고 치밀하게 체형을 정돈할 수 있으며, 또한 디자인적으로도 장식성이 뛰어나 우아하고, 호화롭고 품위를 발휘해 세련되고, 게다가 중량은 경량으로 해 통기성이 뛰어남으로써 착용시에 화끈거리고 땀이 차거나 가려움이 생기지 않고, 운동성을 충분히 발휘하며, 나아가서는 구조 간단하게 하여 제작, 조립이 용이하고 제작비가 염가의 파운데이션 속옷을 제공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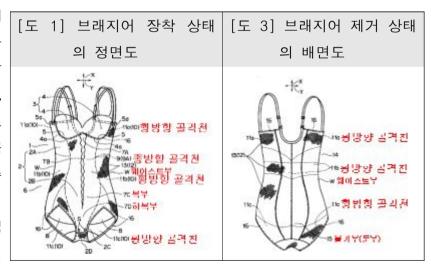
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0005] 본 고안은 상기 과제를 반영해 된 것이고, 청구항 1에 기재된 고안은, 불신축성의 포백에 의해 형성되어, 앞길 쪽에 세로로 길게 배치되는 종방향 골격천과, 신축성을 가지는 포백에 의해 형성되어 다수의 구멍이 설치되거나 신축성을 가지는 네트재로 형성되어 상기 상기 종방향 골격천에 대해 적어도 대략 교차하여 앞길의 좌우에 적당한 개수가 배열되는 횡방향 골격천과, 신축성을 가지는 실로 적당한 도안으로 직조되어 다수의 그물코를 가진 레이스지에 의해 형성되고, 상기 종방향 골격천 및 상기 횡방향 골격천의 표면 측의대부분에 소망 형상으로 꿰메져 부착되는 장식 표면천으로 속옷 본체를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래 고안의 실시 형태

[0014] 이하 도 1 내지 도 7에 따라 본 고안의 제1 실시 형태의 구체적인 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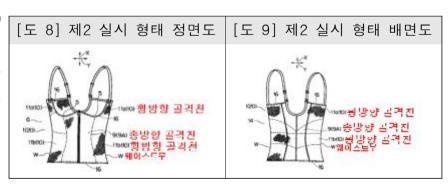
[0015] 또한 속옷 본체(1)는, 상하 방향(X) 또는 좌우 방향(Y)에 불신축성을 발휘하여 언더 바스트부(4a,4a)의 대략 아래 가장자리로부터 위부(7B)를 거쳐 하복부(7D)에 이르는 소정 치수및 소정 형상의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포백(9A)에 의해 형성되며, 앞길



(6) 쪽의 대략 중앙에 세로로 길게 배치되는 종방향 골격천(9)과, 상하 방향(X) 및 좌우 방향(Y)으로 신축성을 갖는 포백에 의해 형성되며 다수의 구멍이 마련되거나 혹은 상하 방향 및 좌우 방향으로 신축성을 갖는 네트재(10)로 형성되며, 상기 종방향 골격천(9)에 대하여 적어도 대략 교차하여 앞길(6)의 좌우에 적당히 개수가 상하 수 단으로 배열되는 횡방향 골 격천(11a, 11b, 11c)과, 신축성을 갖는 실로 적당히 도안(D), 예를 들면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은 식물의 잎이나 줄기 무늬 외에, 꽃무늬, 동물 무늬, 기하학적 무늬 등으로 직조되며, 다수의 그물코(A)를 가진 레이스지(12)에 의해 형성되며, 상기 종방향 골격천(9) 및 횡방향 골격천(11a, 11b, 11c)의 표면 측의 대부분에 꿰매져 부착되어 보디슈츠 본체(1)를 형성하는 원하는 형상의 장식 표면천(13)으로 형성된다. 상기 브래지어(3)는, 자기의 바스트의 형상, 치수에 적합한 크기의 것을 선택하여 차여져 사용된다. 위부(7B), 복부(7C)를 거쳐 하복부(7D)에 걸쳐 앞길(6)의 대략 중앙에 배치된다.

[0017] 상기 횡방향 골격천(11a)은, 속옷 본체(1)가 도시하는 본 실시 형태의 보디슈트 (2)에서는 앞길(6)의 상기 컵둘레부(5, 5)의 좌우의 겨드랑이의 아래(5a, 5a)로부터 뒷길(14)의 등부에 걸쳐 상기 종방향 골격천(9)을 중앙으로 하여 마련됨으로써 겨드랑이의 아래(5a, 5a)로부터 등부에 걸친 군살을 좌우 균형하여 조여 체형을 정돈함과 아울러 굴신(굽히고 펴기), 선회, 비틂 등의 운동을 추종하여 원활하게 신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기 횡방향 골격천(11b)은 종방향 골격천(9)을 중앙으로 하여 좌우의 옆구리로부터 웨이스트부(W)를 거쳐 뒷길(14)의 등부에 걸쳐 마련됨으로써 군살이 붙기 쉬운 좌우의 옆구리로부터 등부에 걸친 허리둘레의 군살을 좌우 균형하여 조여 체형을 정돈함과 아울러 굴신, 선회, 비틂 등의 운동을 추종하여 원활하게 신축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횡방향 골격천(11c)은 속옷 본체로서의 보디슈트(2)의 뒷길(14)의 볼기부(둔부)(15)를 에워싸도록 마련됨으로써 볼기부(15)의 군살을 조여 힙 업을 도모하고 체형을 정돈함과 아울러 하지의 굴신, 선회, 비틂 등의 운동을 추종하여 원활하게 신축하도록 하고 있다.

[0026] 도 8 및 도 9 는 본 고안의 제2 실시 형 태로서, 속옷 본체(1)가 웨이스트 니퍼(20)에 적용 된 경우이다. 이 실시 형 태에서도, 상기 제1 실시 형태와 동일하게 속옷 본



체(1)가, 앞길(6)의 대략 중앙에 배열되며, 불신축천(9A)에 의해 형성되는 종방향 골격천(9)과, 이 종방향 골격천(9)에 대략 교차하여 앞길(6)의 좌우에 배열되며, 신축성을 갖는 포백에 의해 형성되어 다수의 구멍이 마련되거나 또는 신축성을 갖는 네트재(10)로 형성되는 횡방향 골격천(11a, 11b)과, 신축성을 갖는 실로 적당한 도안(D)으로 직조되어 다수의 그물

코(A)를 가진 레이스지(12)에 의해 형성되며, 상기 종방향 골격천(9) 및 상기 횡방향 골격천(11a, 11b)의 표면 측에 꿰매져 부착되는 원하는 형상의 장식 표면천(13)으로 구성되며, 브래지어(3)의 좌우의 컵부(4, 4)의 언더 바스트부(4a, 4a)에 대략 합치하는 곡면을 가져 브래지어(3)의 좌우의 컵부(4a, 4a)를 수용하는 좌우의 컵둘레부(5, 5)를 앞길(6)의 가슴부 (7A)에 형성한 구성인 점은 상기 제1 실시 형태와 거의 동일한 구성으로서, 거의 동일한 작용·효과가 있다.

[별지 7]

선행발명 7

발명의 명칭: 보정 속옷

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탄성천을 이용한 보정 속옷의 보정 기능 강화 기술에 관한 것으로, 특히 조임 부분을 중첩천으로 구성하는 보정 속옷의 개량에 관한 것이다.

대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

[0003] 그런데 종래의 보정 속옷에서는, 보정 강화 부분의 중첩천을 2겹 구조로 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즉, 본체천에 대하여 소정 형상의 1장의 덧댐천(바대)을 꿰매어 부착한 것이다. 그리고, 이 덧댐천에 각종 천재나 두께의 것을 적용하여, 그 덧댐천에 의해 조임 기능이나 끌어올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0004] 그러나, 이러한 보정 강화 부분의 중첩천을 2겹 구조로 한 종래의 구성에서는, 보강을 위한 천의 탄성 강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원하는 보정 효과를 반드시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는 한정되지 않는다. 특히, 덧댐천을 탄성 강도가 높은 것으로 하여, 보정 기능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강도 자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해도, 국부적 압박 등의 위화감이 장착자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느낌이나 불필요한 피로감을 발생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다.

[0005] 본 발명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특히 보정 강도를 높이고 자 하는 부분을 보다 강력하게, 게다가 그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다른 부위로 강도 이행해 가도록 하여, 부착성이 좋고, 위화감이나 피로감을 발생시키는 일이 없어 쾌적한 착용감을 얻을 수 있는 보정 속옷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0006] 상기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항 1의 발명에서는, 탄성천을 이용한 보정속옷으로서, 신체의 조임, 끌어올림 등을 위한 조임 부분을 중첩천으로 하여 그 부분의 탄성 강도를 다른 부분보다 높게 한 것에 있어서, 조임 부분의 중첩천을 순차적으로 천 폭을 좁혀 2겹, 3겹 또는 그 이상의 여러겹 구조로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정 속옷을 제공한다.

래 발명의 실시 형태

[0013] 제1 실시 형태(도 1~도 3) 본 실시 형태는 본 발명을 보디슈트에 적용한 경우

의 것이다. 도 1은 본 실시 형태의 보디슈트를 앞면 쪽에서 본 상태에서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2는 일부를 생략하여 등쪽 내면을 본 상태 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3은 주요 부분의 여 러겹 구조 부분의 구성을 확대하여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0014] 이들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실시 형태의 보디슈트(1)는, 가슴부 보정용의 브래지어부(2), 그 하부의 언더 바스트부(3) 내지 웨이스트 조임용 웨이스트 니퍼부(4), 나

[도 3] 보디슈트 주요 부분의 여러겹 구조 부분의 구성을 확대한 단면도

3겹 구조의 보정 강화 부분
2겹 구조 부분
3겹 구조의 보정 강화 부분
2겹 구조 부분
2겹 구조 부분

아가 하방의 힙 조임 및 끌어올림용 힙업부(5) 등이 일체적으로 연속되도록 구성한 것으로, 브래지어부(2)에는 매달기 끈(6)이 마련되고, 샅부(7)에는 탈착용 호크부(8)가 마련되어 있다.

[0015] 본 실시 형태에서는, 이러한 전체 구성의 보디슈트(1)에 있어서, 브래지어부(2)를 제외한 본체 부분(1a)이, 기본적으로 탄성천의 봉제에 의해 1겹의 본체천(천재(A))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보정 강화를 하고자 하는 부위, 예를 들면 언더 바스트부(3), 웨이스트 니퍼부(4) 및 힙업부(5)가, 복수의 천조각을 서로 중첩시킨 중첩천 구조가 되어, 그들 부분의 탄성 강도가 다른 부분보다 높도록 하고 있다.

[0016] 즉, 도 1의 앞면부에 나타낸 바와 같이, 언더 바스트부(3)를 구성하는 부분이, 제1 안쪽 덧댐천(천재(B))에 의해 폭이 넓은 2겹 구조 부분(9)으로 되어 있다. 또한, 웨이스트 니퍼부(4)로부터 힙업부(5) 앞면 쪽을 구성하는 부분도, 제1 안쪽 덧댐천(천재(B))에 의해 폭이 넓은 2겹 구조 부분(10)으로 되어 있다. 또한, 도 2의 등부 내면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한 각 2겹 구조 부분(9, 10)에 연속되도록 하여 등쪽 및 힙부 쪽에 있어서도, 제1 안쪽 덧댐천(천재(B))에 의해 폭이 넓은 2겹 구조 부분(11, 12)이 형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통상의 2겹 구조의 보정 속옷과 동일한 조임 기능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0017] 나아가, 이들 2겹 구조 부분(9, 10, 11,12)에는, 이들보다 각각 폭이 좁은 천재(C)가 중첩천으로서 꿰매져 부착되며,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천 폭을 좁힌 상태에서 3겹 구조의 보정 강화 부분(13, 14, 15, 16)이 형성되어 있다. 즉, 언더 바스트부(3)의 상하 중앙 부분, 웨이스트 니퍼부(4) 및 힙업부(5)의 상하 중앙 부분이, 각각 도 3에 도시한 바와같이, 천재(A, B, C)에 의해 3겹 구조로 되어 있다.

[0018] 이들 여러겹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천재(A, B, C)에 대해서는, 서로 탄성 강도

가 동일한 탄성천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A=B=C), 또한 탄성 강도를 (A \leq B \leq C), (A \geq B \geq C), (B \geq C \geq A), (B \leq C \leq A), (C \leq A \leq B), (C \leq A \leq B)와 같이 서로 다르게 하여 구성할 수도 있다.

[0020] 이러한 본 실시 형태의 구성에 따르면, 본체천(천재(A))에 대하여 폭이 순차적으로 좁아지는 소정 형상의 2장의 덧댐천(천재(B, C))을 꿰매어 부착하여, 보정 강화 부분의 중첩천을 3겹 구조로 한 것에 의해, 보강을 위한 천의 탄성 강도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음과 아울러, 1겹 부분과 2겹 부분과 3겹 부분의 탄성 강도 변화가 완만해진다.

[0021] 따라서, 특히 보정 강도를 높이고자 하는 부분이 보다 강력하게, 게다가 그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다른 부위로 강도 이행해 가게 되고, 부착성이 좋고, 위화 감이나 피로감을 발생시키는 일이 없으며, 쾌적한 착용감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구성은 비교적 간이하며, 특히 복잡한 봉제를 채용할 필요도 없고,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점도 얻을 수 있다.

매 발명의 효과

[0032] 이상에서 상술한 것처럼, 본 발명에 의하면, 특히 보정 강도를 높이고자 하는 부분을 보다 강력하게, 게다가 그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다른 부위로 강도 이행해 가도록 하여, 부착성이 좋고, 위화감이나 피로감을 발생시키는 일이 없어 쾌적한 착용감을 얻을 수 있는 보정 속옷을 제공할 수 있다.

[별지 8]

선행발명 8

발명의 명칭: 골반 둘레 지지 띠천을 구비한 쇼츠

가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골반 둘레 지지 띠천을 구비한 쇼츠에 관한 것이다.

대 배경기술

[0002]~[0003] 종래부터, 착용시에 허리부를 지지, 안정시키고, 자세를 보정하기 위한 속옷이 몇 가지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속옷은 골반 주변을 골반 상부와 골반 하부에서 착 압하는 것이 많지만, 이러한 것으로는, 부분적으로는 그 나름대로 압박하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느슨해져 버려, 피트감이 나쁜 것이 많았다. 한편, 골반 전체를 균일하게 착압하는 속옷도 제공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것으로는, 착압이 약하면 허리부가 안정되지 않고, 반대로 강하면 복부를 압박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커트 앤드 소우에 의해, 착압강도를 바꾸는 것도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것으로는, 솔기나 시접이 아우터에 영향을 주고, 피부에 자극을 주는 문제가 있다.

때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

[0004] 본 발명의 과제는, 착용 시에 과도한 압박 등이 없고, 피팅감이 좋은, 허리부를 지지, 안정시키고, 자세를 보정하기 위한 속옷을 제공하는 것이다.

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0005] 본 발명자들은, 착용 시에 과도한 압박 등이 없고, 게다가 피팅감이 좋은, 골반 둘레를 중심으로 한 허리부를 지지, 안정시키고, 자세를 보정하기 위한 속옷에 관하여 검토를 수행하였더니, 골반 둘레의 지지 띠천으로서, 편지 조직을 성형에 의해 전환하고, 복부, 옆구리부, 허리부에 적합한 신장도로 한 것을 이용함으로써, 상기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아내고, 본 발명을 완성하였다.

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형태

[0016] 본 발명의 골반 둘레 지지 띠천을 구비한 쇼츠(이하, "지지 쇼츠"라고 약칭함)는, 그 지지 띠천(2)에 특징을 갖는다. 이 지지 띠천(2)은, 탄성사(폴리우레탄사 등)와 비탄성사(나일론사 또는/및 폴리에스테르사 등)에 의해 이음매 없이 통 형상으로 형성하고, 성형 편지(환편)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지지 띠천(2)은 횡방향으로, 편지 조직을 3단계에서 서로 다른 신장성, 긴체력을 갖는 것이 된다. 즉, 복부(2a)를 상대적으로 신

장성이 높은 편지 조직(긴체력은 약함), 옆구리부(2b)를 상대적으로 신장성이 중간인 편지조직(긴체력도 중간), 허리부(2c)를 신장성이 낮은 편지 조직(긴체력은 셈)으로 각각 형성된다. 아울러, 신장성이란 원단의 늘어나기 쉬움을 말하며.



긴체력이란 신장에 대한 원단의 저항력을 말한다.

[0017] 상기와 같이, 지지 띠천(2)에 3단계의 서로 다른 신장성, 긴체력을 배치하는 수단의 일례로는, 복부(2a)를 레이스 뜨기, 옆구리부(2b)를 고무 뜨기, 허리부(2c)를 멍석 뜨기로 하는 것과 같은 편지 조직을 연속 설치하는 방법을 예로 들 수 있다.

[0018] 그리고, 이 복부(2a), 옆구리부(2b) 및 허리부(2c)의 편지 조직은, 이들을 이음 매 없이 연장 설치하고, 원통형으로 한다. (후략)

[0022] 본 발명의 지지 쇼츠(1)에 있어서, 도 1 및 2의 형태의 것은, 지지 띠천(2)의 하단(6)과. 쇼츠부의 상단에 있어서 봉제되어 있다.

배 발명의 효과

[0010] 본 발명의 골반 둘레 지지 띠천을 구비한 쇼츠는, 여기에 마련된 지지 띠천이 복부, 옆구리부 및 허리부에 있어서, 3단계의 서로 다른 신장성, 긴체력을 갖는 편지 조직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착용 시에 허리부를 지지, 안정시키고, 자세를 보정함과 아울러, 복부를 세게 압박하지 않고, 적합한 착용감을 확보할 수 있다.

[별지 9]

선행발명 9

발명의 명칭: 체형 보정 기능을 가지는 의류

개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의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체형 보정 기능을 가지는 의류에 관한 것이다.

대 배경기술

[0004] 이와 같은 보정속옷은 대부분 몸을 조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몸체 달라붙은 상태로 있으며, 따라서 그 위에 입는 겉옷은 상대적으로 헐렁한 상태로 있게 된다. 결국, 보정속옷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는 경우 보정속옷과 겉옷이 따로 놀게 되며, 이는 착용자에게 편안하지 못한 어색한 느낌을 준다.

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0006]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착용시 보정속옷과 겉옷이 일체감을 갖도록 하는 체형 보정 기능을 가지는 의류를 제공한다.

[0009] 본 발명은 보정속옷의 둘레면에 배치된 보조적인 신축티를 가짐으로써 필요한 부위를 더욱 조이도록 함으로써 체형 보정 효과가 배가되는 체형 보정 기능을 가지는 의류 를 제공한다.

래 과제 해결 수단

[0010] 본 발명은 체형 보정 기능을 가지는 의류를 제공하며, 이 의류는: 착용시 신체의 소정부위를 압착하도록 신축성을 가지는 보정속옷; 및 겉옷;을 포함하고, 상기 보정속옷은 상기 겉옷과 접합하는 적어도 1부위 이상의 접합부에 의해 접합된다.

[0016] 상기 속옷에 내면 또는 외면 둘레에 부착된 적어도 하나의 신축띠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23] 겉옷(10)과 보정속옷(20)은 적어도 1부위 이상 배치되는 접합부(25, 26, 35, 36)에 의해 접합되어 있다.

[0026] 보정속옷(20)은 예를 들어 스판이나 메시(mesh) 천과 같은 신축성 재질로 이루어 진다.

[0036] 본 발명의 체형 보정 기능을 가지는 의류는 또한 속옷에 내면 또는 외면 둘레에

부착된 적어도 하나의 신축띠(24)를 더 포함할 수 있다.

[0037] 이러한 신축띠(24)는 특히 가슴부위 아래나 하복부와 같이 상대적으로 더 조이거나 받쳐야 할 필요 가 있는 부위에 배치된다.

[0039] 이러한 신축띠(24)는 보강신축부로서 보정속 옷(20) 본체를 이루는 소재 보다 더 높은 신축성을 가 지도록 할 수 있다. 도면에서는 신축띠(24)가 전면에만 보이고 있으나 둘레면 전체에 걸쳐서 부착된다.

바 효과

[0018] 본 발명에 따르면 착용한 보정속옷과 겉옷이 일체감을 갖기 때문에 착용자에게 편안함 느낌을 주게

[도 1] 체형 보정 기능을 갖는 남성용 의류의 예 집합부 이께끈의 신축띠과

된다. (중략) 또한 보정속옷의 둘레면에 배치된 보조적인 신축티를 가짐으로써 가슴 아래부 위나 복부 부위 등 필요한 부위를 더욱 조이도록 함으로써 체형 보정 효과가 배가될 수 있 다.

[별지 10]

선행발명 10



[별지 11]

선행발명 11



끝.